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038-10

www.mafra.go.kr

2013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서

2013. 4

희망찬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 목 차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 1

Ⅰ. 사업개요 ····· 3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5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4

Ⅳ.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51

▣ 밭농업직접지불사업 ····· 101

Ⅰ. 사업개요 ····· 103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04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10

Ⅳ.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29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 157

Ⅰ. 사업개요 ····· 159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61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64

Ⅳ.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80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구 분	담당자	전화번호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정책상담	사무관 김선범	044-201-1776~7
지자체 업무담당자 상담	사무관 정영수	044-201-17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계획 수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특히, DDA협상, 쌀협상 등에 따른 쌀 시장개방이 확대에 대비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목표 및 지표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고정직접지불금, 변동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의 실질수입을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의 97.5% 이상 유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농가소득지지율(%) (변동직불금)	97.5	97.2	104.5	108.9	2014.3	목표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수확기 쌀값+직불금)을 백분율화
▪ 신청 대비 적격비율(%) (고정직불금)	98.6	99.9	99.6	99.6	2013.12	신청자 수 대비 최종 적격자 수를 백분율화
▪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지급대상 감소면적(천ha) (고정직불금)	2	-	-	9	2013.12	전년도 고정직불금 지급면적 대비 당해년도 지급면적 감소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47,912,406	1,418,823	680,130	723,630	1,997,641
보 조	47,912,406	1,418,823	680,130	723,630	1,697,641
○고정직불금	45,620,957	619,500	618,100	698,400	1,353,300
- 보 조	45,620,957	619,500	618,100	69,8400	1,353,300
○변동직불금	2,291,449	799,323	62,030	25,230	630,211
- 보 조	2,291,449	799,323	62,030	25,230	630,211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 농지(법 제5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휴경 포함)임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다만, '05년 1월 1일부터 '08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사용허가가 종료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여 당해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위의 각목에 따른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할 수 있음

④ 법 제13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농지**(등록제한기간은 5년 이내)

나.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임.

① 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②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 1년 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벼를 파종·수확하였다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볼 수 있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 면적

○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2. 지급 대상자(법 제6조)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논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③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한 사람이 **사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사망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 **농업인**

-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④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이 경우 등록신청하는 연도에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 농업인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경우 면적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나.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다만, **"나"에 해당자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함**

* 주소 기준 : 등록신청 당시 기준으로 하며, 등록증 발급 시에 주소지를 재확인

①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같은 시·군·구'의 의미: 쌀직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한 시·군·구에 1만㎡ 이상 경작해야 한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가 이천시에 있는 농지 1만㎡ 이상 경작한다면 지급대상이고, 용인시 6천㎡, 이천시에 5천㎡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님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2년 경작기간 : 벼 농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1년에 2개월 이내)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이사 온 경우에는 예외 인정할 수 있음
* 연접한 읍·면·동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 행정동

다.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아래 ③과 ④번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농지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 휴경으로 신청한 면적을 제외하고, 논농업에 이용(경작)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면적계산시 타 시·군·구에 등록신청한 면적은 포함)

③「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쌀소득등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3. 신청 자격

법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법 제6조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치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4.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 아래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변동직접지불금

- 고정직접지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5. 지원형태 및 기준

가. 지원형태

○ 고정직접지불금 : 지방자치단체 보조

○ 변동직접지불금 : 직접수행

나. 재 원

○ 고정직접지불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세전입금계정)

○ 변동직접지불금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다. 지원기준

○ 고정직접지불금

- 지급단가

※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13년부터 80만원/ha으로 인상되었으며, 향후 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 지급단가가 확정 되는대로 고시할 예정임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대상농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시기 : 2013년 12월

○ 변동직접지불금

- 지급기준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

$$\text{- 목표가격} = \frac{\text{비교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text{기준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 \times \text{변경 목표가격 산출 직전 목표가격}$$

※ 비교연도는 변경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며, 절단평균은 최고치·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이하 "절단평균"이라 한다)임

※ 목표가격은 확정 되는대로 고시할 예정임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기준)

【(목표가격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85%】- 고정직불금 단가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당해 연도 10월 1일~다음 연도 1월 31일
- 고정직불금 단가 : 농업진흥지역 안 및 밖의 가중 평균한 가격

- 농가당 지급금액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ha(10,000㎡)당 생산단수 × 벼재배면적(ha), 산출결과 10원미만 절사

$$\text{ha(10,000㎡)당 생산단수} = \frac{\text{비교연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값}}{\text{기준연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값}} \times \text{변경 단위생산량 산출 직전 단위생산량}$$

※ 비교연도는 변경 단위생산량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한다.

- 지급시기 : 2014년 3월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농업인등 : 등록신청서 제출

가. 등록신청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등록신청**

- 등록신청 기간 : 2013.5.1 ~ 2013.6.15

나.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첨부서류만 관내경작자의 기준에 따라 처리

* 관내경작자 :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

○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할 때에는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24호서식)을 작성·제출토록 하고, 접수번호 기재 등 확인 후 접수증 하단부을 절취하여 배부하여야 함**(법 제7조)**

- 아울러,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관리대장**(별지 제23호서식)에 접수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 별지 제23호서식의 지급여부란에는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지급후 지급여부를표시하여 누락자를 관리할 것

다.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다만, 읍·면·동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

①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05-'12년간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생략(AgriX시스템에서 확인), 그 밖의 농지는 농지소재지 마을 이장과 주민 3명이 서명한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 등 제출

㉮ 법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 등

㉯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지원 확인서 등

※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 면제 기준

○ 직전 연도(12년)에 등록한 농지 이외 추가로 신청하는 농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 관련 서류는 제출 생략**

《지급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① (신규 신청인)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입증서류

⇒ AgriX시스템에서 확인(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만 증명서류 제출)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휴경하는 경우 제외)

⇒ 1만(5만)제곱미터 증명 : (신청자 명의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경작 증명(2년 이상) : (신청자 명의의) '11～'12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확인 서류, 2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1호의4 서식,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 면적계산(1만 또는 5만제곱미터) : 타 시·군·구에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합한 면적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이 사망(뇌사판정 포함)하여 사망자(뇌사자)의 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

⇒ 사망 또는 뇌사판정 확인 :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뇌사 판정서

⇒ 치료로 인하여 사망 당시 주소를 같이 하지 못한 경우 : 이장 확인서

⇒ 농업인 증명 : 1천제곱미터 농지 경작,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등을 증명하는 서류

㉱-1 다만, 승계 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중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른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증명 서류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

㈐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시행규칙 제2조의2제5호의 가목 또는 나목을 충족하는 농업인등

⇒ 토지대장, 농지원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1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5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2 지급대상농지에서 직전년도 수확한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지급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면제 기준(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2호)

○ 직전연도('12년)에 신청자가 전년도와 동일한 요건(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등, 2년이상 1ha 이상 논농업 종사자, 논농업을 통한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자, 직전 연도에 등록한 자가 사망하여 2년 이상 동거한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어느 하나)으로 '13년에 등록할 경우에는 쌀직불금 지급자 확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 생략

○ 직전연도('12년)에 신청자가 전년도와 동일한 요건으로 으로 '13년에 등록할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 제출 생략 기준

-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사망승계)의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동 호 가목(농촌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나목(농촌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 자에 한하여 생략(단, 주소지 변경이 관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생략 가능)

② (기존 수령자)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 생략(AgriX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②-1 (농촌 외의)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중 하나를 추가로 제출

*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농촌 외의 지역 여부 확인 : 읍·면·동장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연접 허용 안함)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RPC에 쌀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쌀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RPC공식 기관명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 소규모 도정공장(일명 방앗간)에 판매한 경우 입금받은 계좌이체내역(간이영수증은 제외)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공공비축미곡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현재 주소지(자치구 기준))에 두고, 해당 시·구(자치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2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 '11~'12년도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1-4호 서식,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 '05~'08 동안 1회이상 쌀직불금 수령자 여부 확인 서류 면제 기준(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2호)

-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사망승계자 중 농촌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 및 법 제6조제2항('05~'08 수령자 중 농촌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에 따른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이 직전연도에 확인된 자로서 직전연도와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 자에 대하여 생략(단, 주소지 변경이 관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생략 가능)

《경작사실 증명 관련 서류》

① **(경작사실 확인서)** 관내경작자 및 관내경작자 외의 자 모두(별지 제1호의2·3 서식)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② **(영농기록)** 다음 서류 중 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RPC,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 벼 등의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서류

⇒ R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그 밖에 논농업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

* 영수증 등 모든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와 등록신청 직전연도 또는 당해 연도분만 인정됨

*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 2개 이상 서류 : ㉮, ㉯, ㉰, ㉱, ㉲ 등 5개 중에서 2개를 의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은 읍·면·동장이 확인

※ 경작사실 증명 관련 서류 면제 기준

○ 주소지와 신청 대상 농지가 직전 연도와 동일한 자

○ 직전연도에 관외경작자였다가 그 이후에 주소지를 신청 농지 소재지로 이동하여 관내경작자가 된 자 중 직전 연도와 신청 대상 농지가 동일한 자

《기타 서류》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함

⇒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로 인해 법 제8조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신고시 반드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② **(타인 소유 농지)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쌀직불금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 임차한 농지를 휴경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주의 확인서 제출

* 2012년도에 무단 점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농지로서 농지 소유권·임대권·임차권 등의 변화가 없으면 2013년도에는 증명서류 제출 생략 가능

* 국·공유지는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가. 등록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읍·면·동장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2013.5.1~ 6.15**

○ **등록신청서 전산 입력기간 : 2013.5.1~6.21**

- 등록신청서 입력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

○ 등록신청서 접수 시 확인사항 :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구비 여부

나.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 여부 확인

①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여부

-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일정요건 충족시 **지급대상**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상한면적 확인**

* 등록신청자의 농지는 **모두 접수** 하되, 쌀 직불금은 지급상한 면적까지만 지급

〈지급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개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하여 생산물 등 이익이 최종 귀속되는 법인이 지급상한 적용을 받음
- 여타 농업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조직한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생산물의 이익 등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 해당 법인은 실경작자가 아니므로 직불금 신청 권한이 없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신고 및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 포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자가 소유한 농지**(5년 이내)

* 등록신청 기준일 현재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임차해 주거나, 등록 제한 기간 내에 새로 구입한 농지도 등록신청 대상농지에서 제외
*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등록·신청할 수 있음

다.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① 신규로 신청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

* 2009년도 이후 신규진입자는 2013년에도 신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반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사망(뇌사 포함)에 의한 승계의 경우에는 확인 불요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여부

* 종전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된 자, 또는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농업인은 쌀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하여 **1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5만제곱미터, 4천5백만원)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

☞ 논농업을 승계한 배우자·직계존비속 중 승계자의 자격요건

☞ 20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1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법인 5만제곱미터, 4천5백만원)이상 농지를 경작 여부 확인

②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등은 지급대상

②-1 다만,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중, "농촌" 이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의 주업 요건 확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읍·면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인천광역시/경기도-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서울/인천광역시/경기도-은 제외한다)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등

〈**농산물의 개념**〉

-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버섯,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과,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및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등록신청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③ 쌀직불금 제외 대상자 확인

☞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등록신청서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괄 확인 예정

☞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하는 농지분)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라.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①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경작사실 확인서**

② (영농기록)**관내경작자**는 **1개 이상**, 그 외의 자는 **2개 이상**의 서류

⇒ 농협에서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③ 기타 등록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및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 정보공개 기간 : 등록신청 전산마감을 종료한 후 30일간

○ 정보공개 방법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 대상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가.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 조사 및 심사기간 : 2013.7.31까지

○ 현지조사 등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같은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 면적·거리 등을 고려 농지소재지 읍·면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재임 가능)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 관외경작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
  · 사망(뇌사 포함)으로 승계 받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심사
  ·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군·구청장에게 2012.7.31까지 제출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 발급 : 2013.8.23까지**

○ 발급요건

-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
- 지급 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
  · 농업인 자격요건 해당 및 논농업 종사 여부
  ·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 확인
  ·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 별지 제2호 서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별지 제3호 서식**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8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해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에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함

나. 등록증 수정

○ 수정사유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다.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2013.9.30까지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 대상자

- 변경등록 신청 :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변경등록 신청
- 변경등록 신고 :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쌀직불금 신청자가 변경등록기간내에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연락하여 자격요건(사망직전 2년 이상 동일 주소 거주)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승계 가능토록 조치할 것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변경등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추가 등록신청)면적이 당초 등록된 면적의 2분의1 또는

변동(추가 등록신청)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가목1) 또는 나목1)의 경작사실 확인서만 제출.

㉰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나목의 서류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다만,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③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증 발급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한(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자금 배정

라. 고정직접지불금 자금 요청

○ 자금 요청기간 : 2013. 10. 18일까지

○ 요청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농지면적, 고정직불금액 등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고는 AgriX시스템으로 하되, 시·도에서는 기관장 결재 후, 관인 날인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 별지 제11호 서식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등을 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는 세부점검기준 및 계획 수립·시행

○ **점검기간 : 등록증 발급 후~2개월간**

○ **점검대상 농지 : 시·군·구의 AgriX시스템에서 등록증 발급자 현황 출력**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조사대상 농지를 AgriX시스템으로 전송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 ID를 부여받은 시·군지사는 해당 시·군·구 등록증 발급 농지 전체 출력 → 관할지역 밖의 농지는 관할 지사에 송부 → 관할 지사에서는 대상농지 조사 → 조사결과는 통보한 지사에 송부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내용**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의 설치 및 관리

·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 여부 확인**

○ 점검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및 농지정보 현장조사시스템에서 지적도면 등을 출력 점검
- 필요시 농지의 지적도 등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로부터 확보하여 점검

* 시·군·구(읍·면·동) :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및 관련자료 등 제공

- 대상농지에서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상황을 중점 점검

* 특히, 동일 필지의 농지에 2명 이상이 공동경작으로 등록신청한 경우에는 경계의 설치 및 관리, 농지주변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등은 집중적으로 점검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에는 신청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되,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빙서류(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작성 비치함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및 전송**
-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 보고, 본사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이 AgriX시스템에서 재조사 요청
-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후 확정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있음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에서 입력한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농지에 대해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 농지는 등록대상 농지이나,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농촌진흥청 : 토양검사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23개 시・군) 시・군은 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수행
- 농촌진흥청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시행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시기 : 수확직전 ~11월 상순**

○ **검사대상 농지** : 쌀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 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토양검사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11년도, '12년도 쌀소득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의 지급제한기간 농지의 지속관리

-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 표본 선정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

○ 토양검사 시료채취

-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시료 채취 대상 농지로 선정된 필지에서 시료 채취

○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구 분	유기물 함량 (g/kg)	유효인산함량 (㎎/kg)	치환성칼리함량 ($cmol^+/kg$)
일반 농지	11~40	170이하	0.5이하
간척지 농지	11~35	140이하	0.9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50	170이하	0.5이하
특이산성 농지	20~50	170이하	0.5이하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함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 필지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토양검사 결과를 **‘13.12.15일**까지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3호 서식)
- 농촌진흥청에서는 시·도의 검사결과를 취합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3호 서식)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 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질소질 비료 감축을 위해 생육기 엽분석 실시

- 엽분석 방법 : 농촌진흥청의 생육기 엽분석 실시요령 적용
-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양검사 실시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군·구청장은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약잔류검사

○ **검사기간** : 등록증 발급 후 ~ 11.30

○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농약잔류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 시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출장소장은 시·군별 농약 잔류검사계획을 수립·시행

○ **농약잔류검사 대상** :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약잔류검사 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출장소)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농약잔류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 들녘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12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 농약 잔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는 필히 포함

○ 시료 채취

- 벼를 생산하는 농지에 대해 논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채취
-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건조·제현 후 현미 1~3kg 분석의뢰

○ 농약잔류검사 방법

- 농약 잔류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실에 송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여 제재조치

○ 농약잔류검사 결과 판정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농약 잔류검사결과 통지**

- 농약 잔류분석기관의 장은 정밀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출장소장에게 통지
- 출장소장은 농약 잔류검사가 완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농약 잔류검사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4호 서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4호 서식)

○ 농약 잔류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 시·군·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출장소장으로부터 통보된 농약 잔류검사결과 부적합 판명된 필지(농가)에 대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배정

○ 고정직접지불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고정직접지불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보

○ 변동직접지불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의 위탁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직불금 지급

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13년 12월

○ 지급요건 :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

○ 금액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

※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13년부터 80만원/ha으로 인상되었으며, 향후 진흥지역 및 비진흥지역 지급단가가 확정 되는대로 고시할 예정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전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금된 자금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중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쌀직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고정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고정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별지 제15호 서식)

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시기 : 다음 연도 3월

○ 시·도에서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자금요청(별지 제16호 서식)

- 시·군·구청장은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별지 제17호 서식)

○ 재원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지급요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논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
-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지급단가 :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

○ 지급금액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쌀80킬로그램당 금액 × 1만제곱미터 쌀의 생산량(63가마) × 벼재배 면적

-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하는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안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용
- 1만제곱미터 쌀의 생산량은 쌀 63가마(가마당 80킬로그램)로 고정함

○ 위탁기관의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절차

-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명세에 따라 농협 지정 사무소에 해당 금액을 전금
- 농협 지정 사무소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지급의뢰서에 따라 지급 대상자별 지급금액을 등록신청시 지정한 통장계좌에 등록자별로 입금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직불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변동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반드시 명기
- 농협에서 통장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또는 확인 절차를 거쳐 정당계좌로 입급

* 변동직접지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직불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별제 제18호 서식)

○ 시·도지사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제 제19호 서식)

농협중앙회 : 기금관리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운용 등**

-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

○ 위탁 사무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 기금의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 변동직불금 부당 수령금의 회수 관리
- 변동직불금 운영사항 보고 등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 완료후 관리단계

가. 직불금 수령자 명단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신고포상금 지급 : 시·군·구 및 농림축산식품부

○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하며, 같은 사람이 지급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연간 100만원(1월 1일부터 12월 31일)

○ 신고 기간 : 해당 연도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 신고기관

- 주무관청 : 농림축산식품부
- 관계 행정기관 :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자치구), 등록 신청한 읍·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 신고서 : 별지 제20호 서식(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신고대장 : 신고서가 접수되면 신고대장에 등록(별지 제21호 서식)

○ 조사절차

- 주무관청 및 농지소재지가 아닌 관계행정기관에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동 신고서를 신고대상자의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이송
- 시·군·구청장 : 신고자 자격요건 확인 → 신고서류 확인 → 현지조사 → 피신고자 청문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 판정(읍·면·동장) → 신고자에게 회신 및 포상금 지급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결과 부당 수령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후속 조치

○ 재 원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해당 시·군·구에 자금배정, 시·군·구에서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지급 제외자

-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
-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를 신고한 사람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고대상자가 논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 감액지급 및 등록제한 : 시장·군수·구청장

○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 시장·군수·구청장

○ 부당이득금 회수 :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 받아야 함, 이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함

○ 부당이득금 회수

-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을 회수하고,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
- 법 제13조제1항제2호(지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농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전액 회수
- 법 제13조제1항제3호(농지처분 명령, 무단점유) 제4호(형상유지, 토양·농약검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필지)에 지급된 쌀직불금 회수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대상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회수절차

- 고정직불금 회수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변동직불금 회수 : 반납 통보(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농협 계좌 →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계좌

○ 가산금 부과 :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당지급한 직불금과 그 금액의 2배를 추가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 중가산금 부과 :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부과
- 가산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보

○ 징수대상 금액 및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시·도지사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회수실적을 보고(별지 제22호 서식)

마. 벌칙 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의 거주자

④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바.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에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급면적 초과신청,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의 중복신청, 지적 불일치 필지 등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

7. 보고 사항

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증 발급 결과(별지 제9호 서식) : ‘13.8.31일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10호 서식) : ‘13. 10.31일까지
-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별지 제11호 서식) : ‘13.10.18일까지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13.12.15일까지
-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15호 서식) : ‘13.12.31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요청(별지 제16호 서식) : ‘14.2.15일까지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별지 제18호 서식) : ‘14.4월말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지 제19호 서식) : ‘13.12.31일까지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회수실적(별지 제22호 서식) : ‘13.12.31일까지

○ 시・군・구청장은 농협중앙회 지급사무소에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의뢰

-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세부명세(별지 제17호 서식) : ‘14.2.14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시·도본부장, 시·군지사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별지 제12호 서식) : '13.11.15일까지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토양검사 결과(별지 제13호 서식) : '13.12.6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농약 잔류검사 결과(별지 제14호 서식) : '13.12월말까지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기금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2월15일까지(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설치·연중 운영》

-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 농업인단체 등에 설치
-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자체처리 및 직불금 지급 시·군·구에 7일이내 통보, 해당 시·군·구청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세부사항은 붙임 운영요령 참조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센터 운영요령 : 붙임참조

8. 성과측정단계

○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비율을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성과 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측정
고정직불금	신청 대비 적격비율(%)	(최종 적격자 수/ 신청자 수)×100	- 당해 연도 12월 - 당해 연도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후 측정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지급 대상 감소면적(천ha)	당해년도 고정직불금 지급면적 - 전년도 고정직불금 지급면적	
변동직불금	농가소득 지지율(%)	(사업연도 실적/ 기준 연도 목표가격) ×100	- 익년도 2월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을 토대로 농가소득 지지율 측정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 수혜농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하반기
- 조사대상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혜농가
- 조사방법 :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9. 사업평가

○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수확기 쌀값+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농가소득지지율이 기준연도 목표가격 대비 97.5%이상 유지하는지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성과 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측정
고정직불금	신청 대비 적격비율(%)	(최종 적격자 수/ 신청자 수)×100	- 당해 연도 12월 - 당해 연도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자 최종 확정후 측정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지급 대상 감소면적(천ha)	당해년도 고정직불금 지급 면적 - 전년도 고정직불금 지급면적	
변동직불금	농가소득 지지율(%)	(사업연도 실적/ 기준 연도 목표가격) ×100	- 익년도 2월 - 당해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을 토대로 농가소득 지지율 측정

* 수확기 : 당해연도 10월1일 ~ 다음연도 1월31일

Ⅳ.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신청서 제출기간** : ‘14.5.1 ~ ’14.6.15일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

-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을 재배한 농지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기재항목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

사 업 추 진 절 차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등록신청	('13.5.1~6.15)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② 신청자 정보 공개	('13.7월)	·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③ 신청내용 현지(서면) 조사 및 심사 - 등록증 교부	('13.6~8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대상농지·농업인·무단점유 여부, 면적, 벼재배 면적, 휴경면적 등 확인 조사 및 심사(읍·면·동)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④ 등록내용 변경 신청(신고) - 농지형상 점검	('13.8~9월)	· 등록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읍·면·동) · **등록내용 변경사항 신청 및 신고**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⑤ 고정직접지불금 교부요청	('13.10월)	· **지급대상자, 면적, 금액을 요청**(시·군·구)
⇓		
⑥ 토양 및 농약 잔류 검사	('13.8~11월)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 농약잔류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⑦ 고정직불금지급	('13.12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수령자 정보공개(30일 이내)
⇓		
⑧ 변동직불금지급	('14.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시·군·구) - 지급대행 : 농협중앙회(시·군지부)
⇓		
⑨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14.3월~)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시·군·구)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신고자와 신고대상자가 임대차 관계 등 특수한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별표2]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정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1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2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다.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3호		
1)「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2)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가)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나)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다)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마.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할 것	법 제13조 제1항제4호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바.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가) 농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1항제4호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2 감액 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②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면적(㎡)		⑥ 농지이용면적(㎡)			대상농지여부			
	읍·면	리·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진흥 지역 안	농업진흥 지역 밖	벼재배	벼 외 작물 재배	휴경	⑦ 1998년~2000년 재배작물	⑧ 1997년 이전 논농업 기간	⑨ 농지전용 등 여부	⑩ 개발사업 예정지 등 보상 여부
		합계												
	⑪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⑫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			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⑬ 읍·면·동장 확인란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없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⑥란은 신청농지의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⑦란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신청농지에서 “벼”, “미나리”, “연근”, “왕골” 중 재배한 품목을 기록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⑧란은 ⑦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벼, 미나리, 연근 또는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⑨란은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인 경우에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⑩란은 신청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 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로 기록하며,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 하천구역 안의 농지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다.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⑪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⑫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⑬란은 신청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2)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5)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4.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면·동	리·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면・동, 시・군・구
근거 법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 6) (생 략) 나. (생 략) 4. (생 략) ③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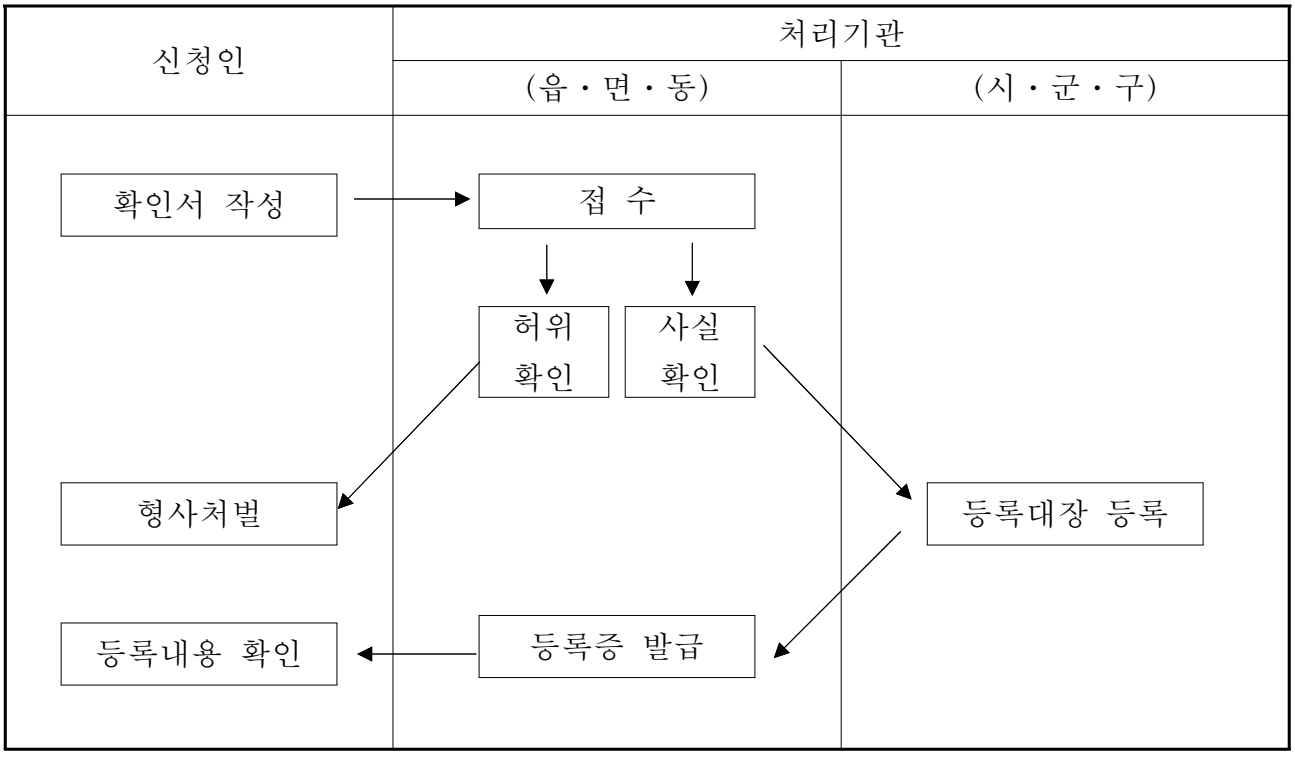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면·동	리·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 소재지 ○○리(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경작사실 확인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읍・면・동, 시・군・구
근거법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생 략) 나.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1)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소재지 이・통장과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2) (생 략) 4. (생 략) ③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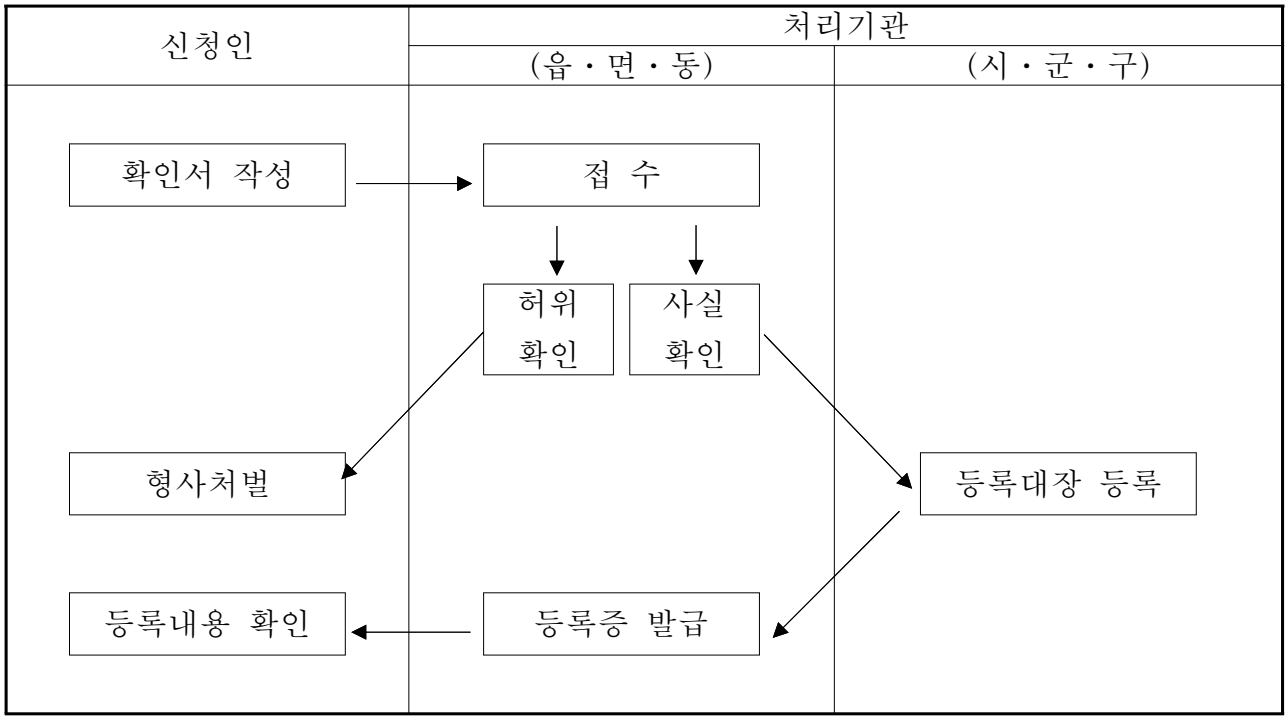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2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면·동	리·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면・동, 시・군・구
근거 법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생 략)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農地原簿)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생 략) 4. (생 략) ③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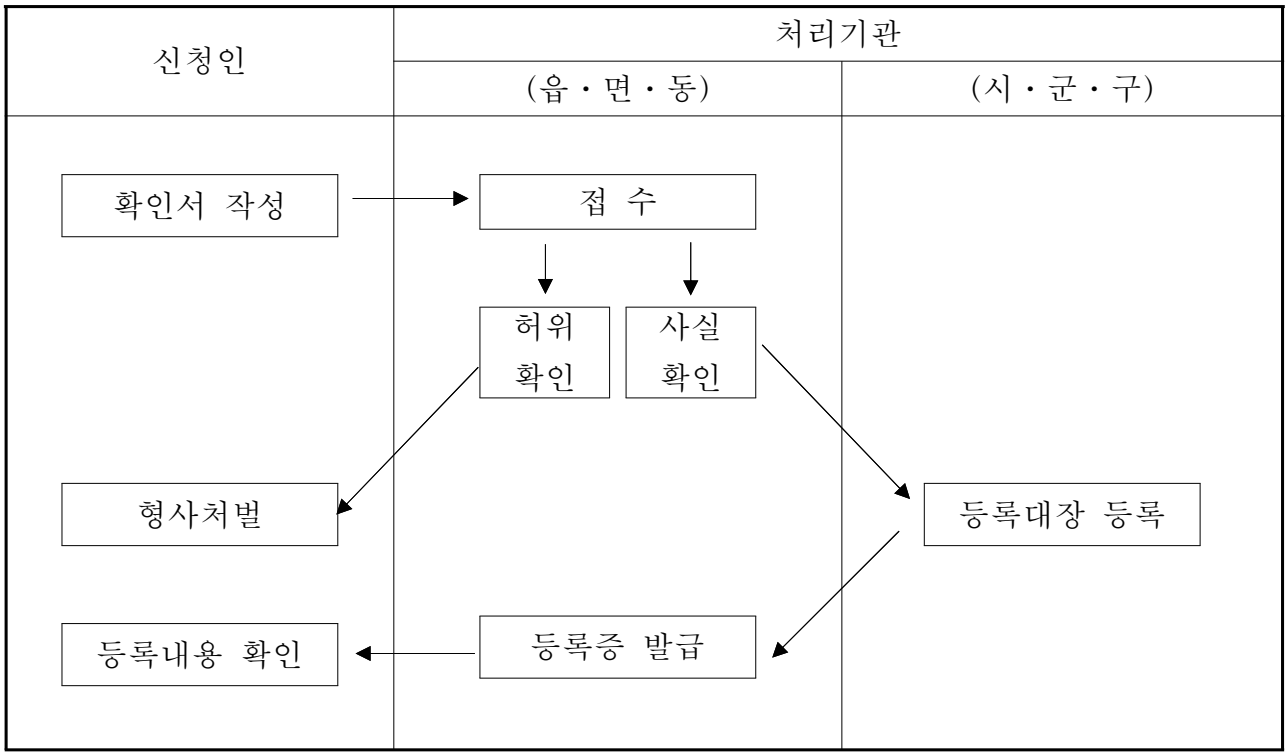

[별지 제2호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번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 현황(㎡)				등록연월일	변경사항
			합계	안 면적	밖 면적	합계	벼재배 면적	벼 외 작물 재배 면적	휴경 면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면적(㎡)		
	읍·면	리·동	지번 (임시지번)	안(㎡)	밖(㎡)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위 신청인은「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년 ○○월 ○○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13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금·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5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②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자, 타, 공유)	변경 전					변경 후					대상농지여부				
						⑤ 면적(㎡)		⑥ 농지이용면적(㎡)			⑦ 면적(㎡)		⑧ 농지이용면적(㎡)							
	읍·면	리·동	지번(임시지번)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벼 재배	벼 외작물 재배	휴경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벼 재배	벼 외작물 재배	휴경	⑨ 1998년~2000년 재배작물	⑩ 1997년 이전 논농업 기간	⑪ 농지전용 등 여부	⑫ 개발사업예정지 등 보상여부	⑬ 전(前) 경작자
			합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⑭ 읍·면·동장 확인란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수수료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청인 작성요령

①란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농지면적, 재배면적이 변경된 농지, 신규 신청하는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및 등록대장에 등록된 농지 중 양수(양도)·임차(임대)·사용차(사용대)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농지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전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⑥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전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⑦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후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⑧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후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⑨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지에서 “벼”, “미나리”, “연근”, “왕골” 중 재배한 품목을 기록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기타”로 기록합니다.

⑩란은 ⑨란에 “기타”로 기록한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 벼·미나리·연근 또는 왕골을 재배한 기간을 기록합니다.

⑪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 중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는 “×”로 기록하고, 그렇지 아니한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⑫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 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로 기록하며,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 하천구역 안의 농지
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다.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⑬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를 양도·임대·사용대한 농업인의 성명을 기록합니다.

⑭란은 신청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3호의 서류는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발급된 등록증
2.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의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사항의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나)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다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변동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가) 또는 2)가)의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다)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라)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마)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바)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나) 1)나)부터 바)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다.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이 변경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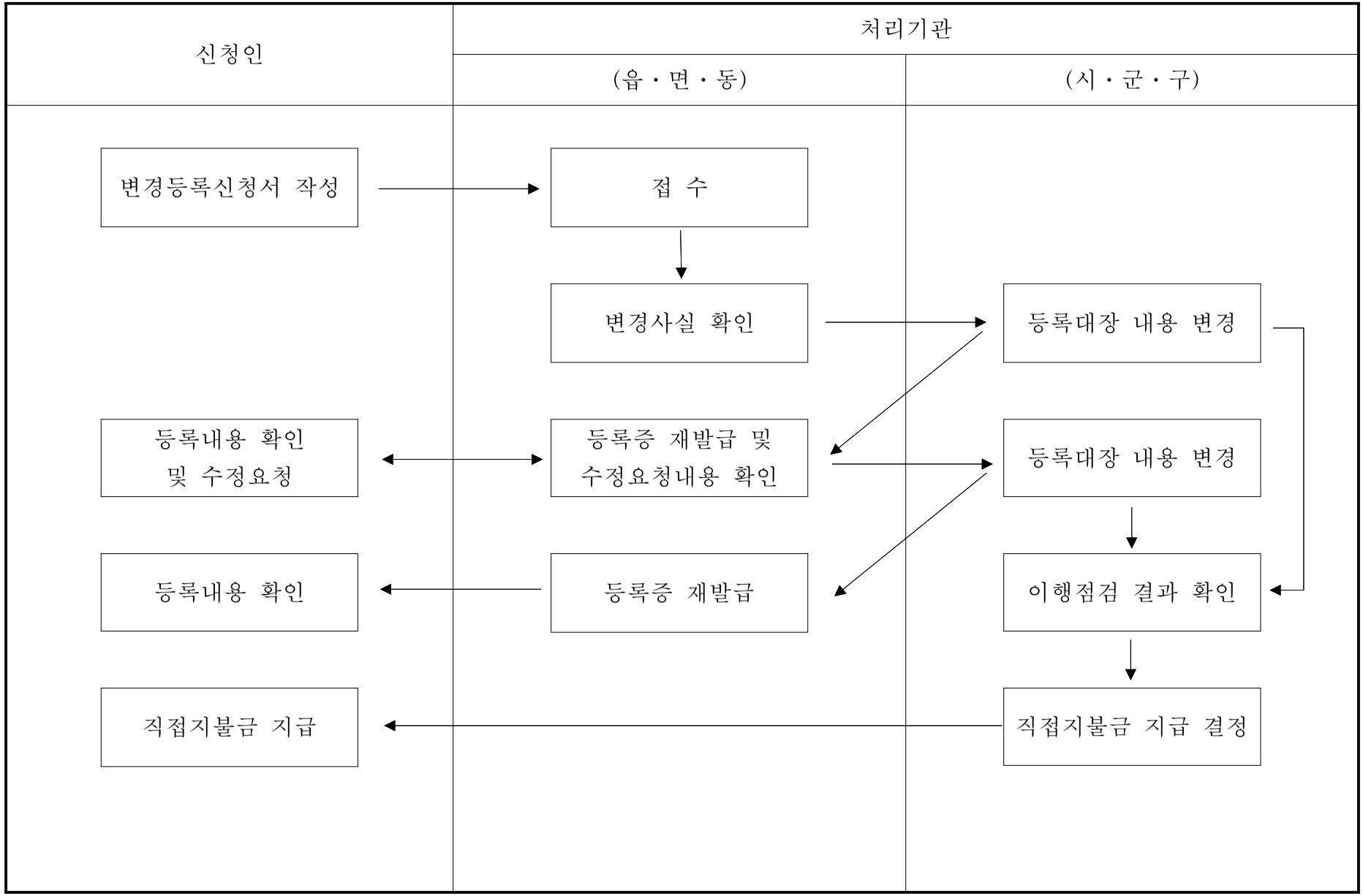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45일

①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②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③ 지목	④ 소유 (자, 타, 공유)	⑤ 면적(㎡)		⑥ 농지이용면적(㎡)			⑦ 전(前)경작자
	읍·면	리·동	지번 (임시 지번)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벼 재배	벼 이외 작물재배	휴경	
		합계									
	⑧ 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⑨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 횟수			회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등록신고를 합니다.

신청인 (인)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⑩ 읍·면·동장 확인란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등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없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①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신고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로부터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③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로,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타”로,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면적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⑥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의 벼 재배면적, 벼 외 작물 재배면적 또는 휴경하는 면적을 기록합니다.

⑦란은 변경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농지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대한 농업인의 성명을 기록합니다.

⑧란은 신고인의 거래 은행 및 은행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⑨란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고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횟수를 기록합니다.

⑩란은 신고인의 신청면적, 벼 재배면적, 신청농지·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제2호의 서류 중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讓受)·임차 또는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사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시행규칙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가)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한다)

다)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라)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한다)

마) 벼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바)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모두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관내경작자 외의 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나) 1)나)부터 바)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다. 신청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법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 이 변경등록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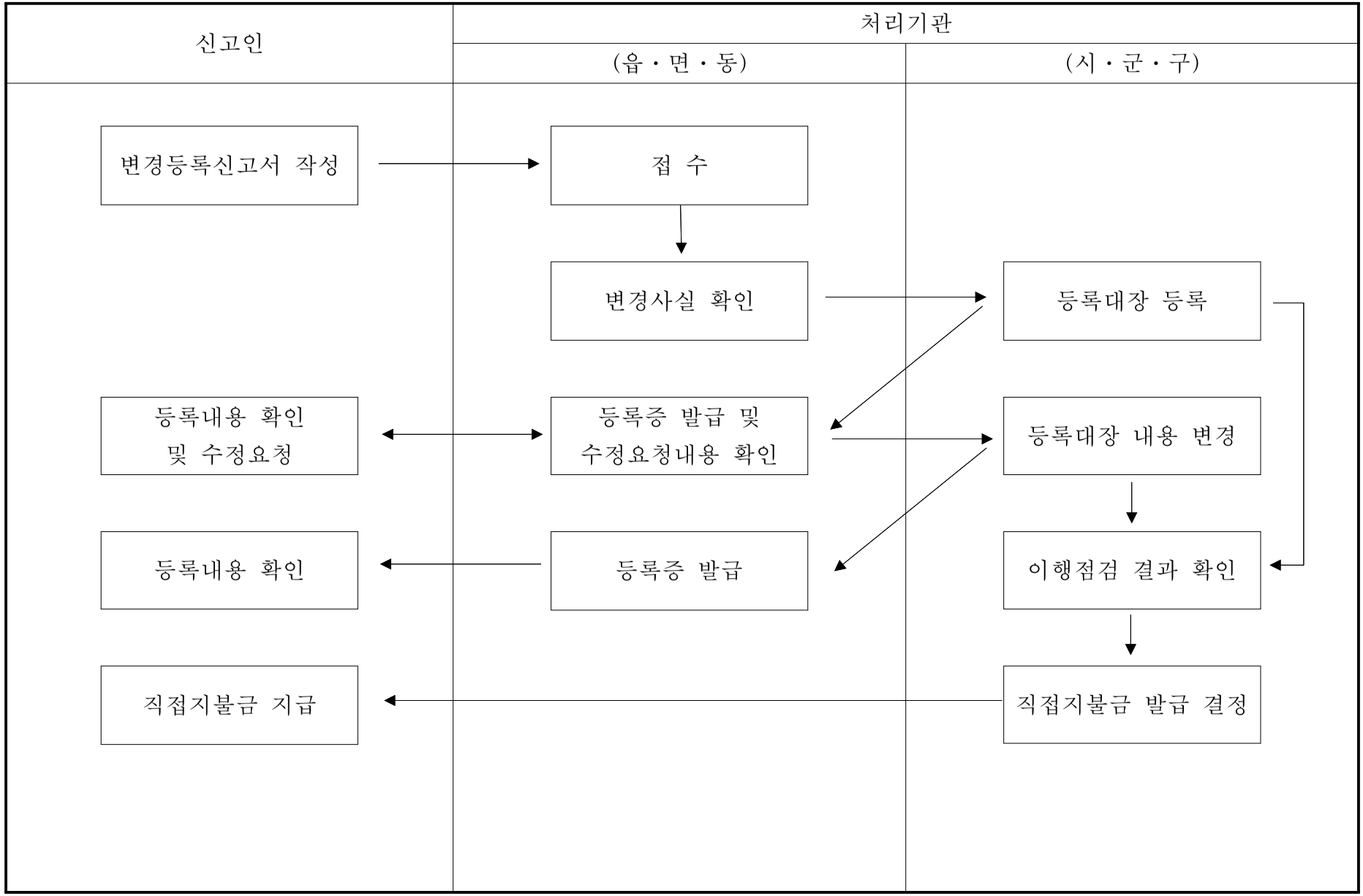

[별지 제6호 서식] (앞쪽)

논농업 이용된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98~'00년 재배작목			
	읍·면·동	리·통	지번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위 농지가 1998.1.1일부터 20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리(통)장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소재지 거주자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제외자 대장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②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③신청내용	농지 소재지			④농지이용면적(㎡)			대상농지여부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벼 재배	타작물 재배	휴경	98~00년 재배작물	97년이전 논 농업	농지전용 등 여부	개발예정 등 여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인]
구청장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증 발급 결과 보고

시·군·구	등록 현황		농업진흥지역 구분			경작 현황				임차현황	
	인원	면적(㎡)	계(㎡)	안(㎡)	밖(㎡)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인원(명)	면적(㎡)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등록 제외자 현황 보고

읍·면·동 (시·군·구)	합 계		농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자		1천제곱미터 미만자		농지처분 명령자		무단 점유자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2012년산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시·군·구	지급대상자 (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이행 농가					불이행 농가					비고
	농가수	농지면적(㎡)				농가수	농지면적(㎡)				농가수	농지면적(㎡)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계	벼재배	벼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본부장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은 불이행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 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 도 본부장 → 시·도지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장(시·도본부장, 사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토양검사 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특별관리 및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합계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농업기술원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농약 잔류검사 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농가수	벼재배면적 (㎡)	
합계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관원 출장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농관원 출장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고정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자금배정액(천원)	지급 면적(㎡)			지급 결과(천원)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 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 요청

시·군·구	지급 대상		농약 잔류검사 부적합		토양검사 부적합		자금 소요액 (천원)	농협중앙회 취급사무소 (온라인코드)
	인 원	벼재배면적 (㎡)	인원	면적(㎡)	인원	면적(㎡)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협중앙회 취급 사무소 : 명칭과 ( )내에 온라인코드를 반드시 기재하고, 금고관리 은행이 농협이 아닌 경우 인근의 농협중앙회 사무소와 협의후 쌀소득보전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사무소로 선정·보고.

- (예) 농협중앙회 시흥시청출장소(0574)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 명세표

기관명 : 시·군·구

(단위:원)

등록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예금주	은행코드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비 고

○ 자료제출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 농협시·군지부장 및 지정사무소

○ 자료 제출 양식

- 엑셀 또는 농협 시·군지부와 협의한 자료로 제출

○ 유의사항 : 농협 지정사무소에서는 등록자 성명과 예금주를 확인 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

※ 항목 세부사항

(1) 은행코드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은행별 코드

- (예) 농협중앙회 : 11, 국민은행 : 04등

(2) 비 고 : 통장에 기장내역 인자처리 (예) 변동직불금

20 년 월 일

제출자 : 시장·군수·구청장(인)

농협 시·군지부장(지점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2012년산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자금배정액		지급 결과		비고
	인원	금액 (천원)	인원	금액 (천원)	
합계					

※ 1ha = 10,000㎡

○ 보고 절차

- 농협시·군지부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협지역본부장
- 농협지역본부장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
- 시·도지사 및 농협중앙회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군지부장, 지역본부장, 중앙회장 (인)

읍·면·동장(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 현황 보고

시·군·구	합 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급대상자 요건 미흡		농지 형상 및 기능 미유지		쌀을 미생산 (농지형상 유지)		농약·토양검사 부적합	
	인 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td><td>처리기간
60일</td></tr>
<tr><td rowspan="2">①신청인</td><td>성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내용></td></tr>
<tr><td>부당수령자 성명</td><td colspan="5">(전화번호)</td></tr>
<tr><td>부당수령자 주소</td><td colspan="5"></td></tr>
<tr><td>부당신청 농지 지번</td><td colspan="5"></td></tr>
<tr><td>신 고 내 용</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법 제28조에 따라 논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6">구비서류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부당수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3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접수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부당 수령자		부당수령 농지지번	처리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별지 제22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회수실적

시·군·구	부당수령자 현황 (가산금 포함)			부당수령금 회수 현황 (가산금 포함)			등록제한 현황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금액(천원)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 운영요령

□ 목 적

○ 영농을 하지 않은 농지소유주가 쌀소득보전직접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실경작자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하여 부당한 신청사실을 신고 받아 시정함으로서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신고센터 설치장소 및 운영기간

○ 설치장소

- 행정기관 : 읍·면·동, 시·군·구, 시·도
- 이행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 운영기간 : 2005. 11월~별도지침 시달시까지

□ 안내도 부착 및 기록대장 비치

○ 신고센터는 신청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입간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신고센터에는 직불금 시행관련 관계법령, 사업시행지침서 및 부당신고서 별지 제20호 서식 등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비치하는 한편, 별지 제21호 서식의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처리실적을 기록 유지해야함

□ 신고센터에서 접수 가능한 사항

○ 실경작자가 임대인의 압력에 의해 직불금 신청을 못한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제시키고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 임차인이 수령한 직불금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경우

○ 기타 실경작자가 부당하게 직불금 신청(수령)을 못한 경우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서면(문서)으로 제기되는 신고사항 뿐만 아니라 방문, 전화, 팩스 등에 의한 신청도 별지 제21호 서식에 접수하여 처리함

-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한 신청사항 중 서면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설명(또는 회신·질의)하고 서면으로 이를 보완토록 할 수 있음

○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단체)에서는 자체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에 신고내용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주소지 관할 시·군·구)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함(이 경우 신고를 접수받은 신고센터에도 통보함)

- 신고서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세부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민원사무처리요령을 준용함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부당수령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부당수령금 회수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 다만,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같이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AgriX에 입력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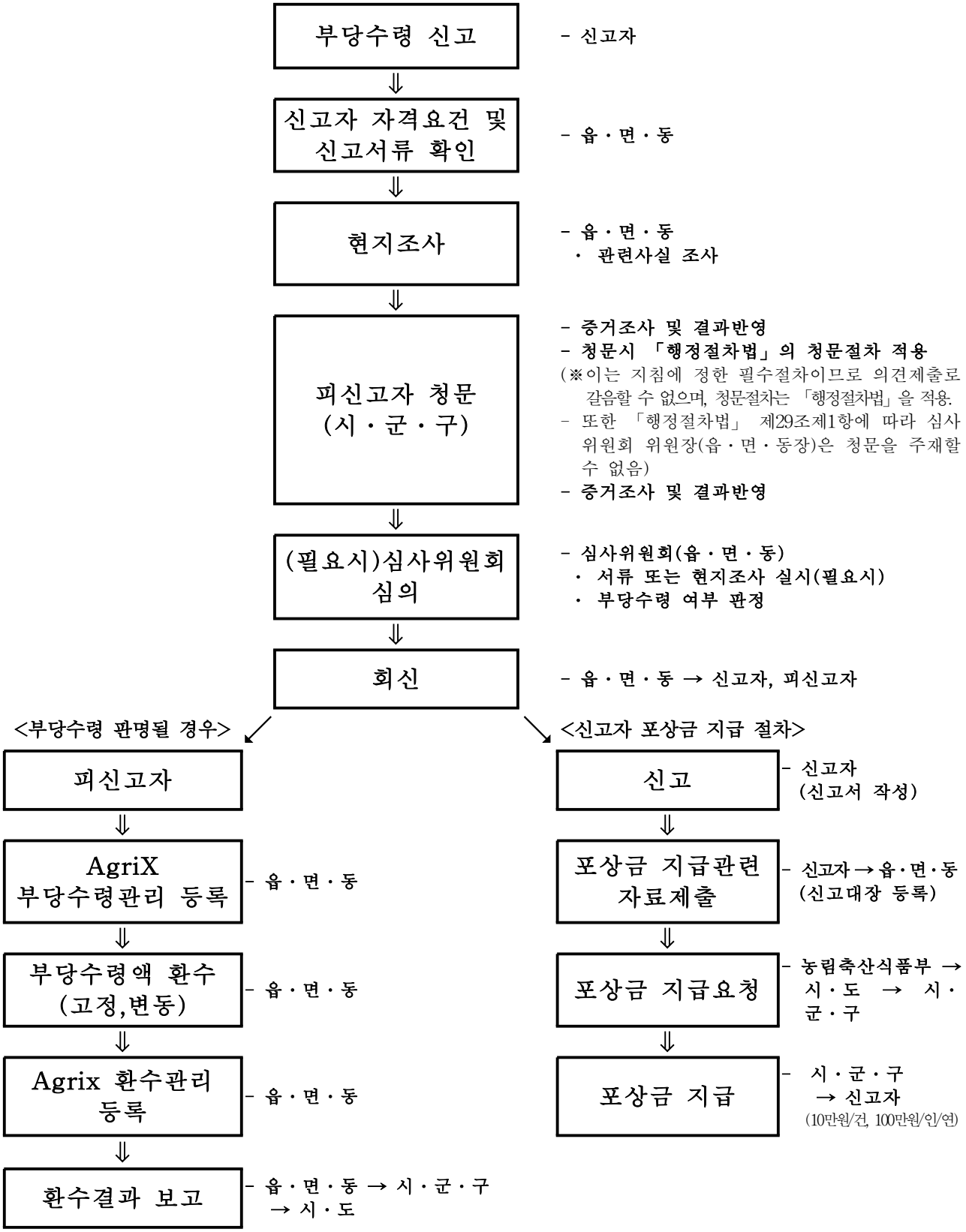

※ 부당수령자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같이 부당수령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AgriX에 입력하여 정리할 것

[별지 제23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관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내역			전산입력 확인	지급여부 (○,X)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고정	변동	

[별지 제24호 서식]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

□ 쌀소득등보전직불급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첨부3>: 2013년도 사업신청 안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 사업목적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천㎡(0.1ha) 미만인 자

·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부터 '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사업내용

○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

- 고정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

*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지급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kg(1가마)당 고정직접지불금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3가마를 기준하여 지급

□ 자금유형

2013년 사업비(단위 : 백만원)		
사업비 합계	고정직불금(보조)	변동직불금(보조)
723,630	698,400	25,230

□ 지원조건

○ 고정직접지불금은 대상농지에서 '01년 이후 벼·연근·미나리·왕골 이외의 다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의 구청(산업과, 지역경제과 등)

- 대상자 등록, 등록대장 비치, 지급요건 이행점검,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6~7)

○ 시·도(농정과 농산과 등)

- 시·군·구사업 지도·감독, 사업내용의 홍보 및 교육

○ 읍·면·동사무소

-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변경)·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전산입력 및 등록대장 비치

○ 한국농어촌공사(시·군지사)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 이행상황 점검
- 지급대상농지에서의 벼재배 여부 확인

○ 시·군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엽분석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 : 농약 잔류검사

○ 농협중앙회 : 기금의 관리·운용사무 수탁 관리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첨부 3] : 사업별 주요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2)	변 경(2013)	변경 사유
사망승계 요건 완화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직전연도에 수령한 사람이 사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 경우 하여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사망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 농업인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한 사람이 사망(『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농지에서 논농업에 계속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사망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사망한 사람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 농업인	○ 쌀 직불금 신청자의 사망시점에 따라 등록 신청자격 승계여부 적용상의 일부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

구 분	현 행(2012)	변 경(2013)	변경 사유
목표가격 산출방식 변경	○ 목표가격 : - 170,083원/80kg	○ 목표가격 : - 비교연도 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기준연도수확기 쌀값의 절단평균값 × 변경 목표가격 산출 직전 목표가격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금을 산출하기 위한 목표가격 산정 시 지금까지는 쌀의 수확기 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쌀의 수확기 가격 중 최고가격 및 최저가격을 제외한 가격을 평균한 가격으로 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변동직불금 산정시 생산량 산출방식 변경	○ 생산량 : - 61가마(80kg)/1ha	○ 생산량 : - 비교연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값/기준연도 쌀 생산량의 절단평균값 × 변경 단위생산량 산출 직전 단위생산량	
신청서류 간소화	○쌀직불금 신청자는 매년 신청시 영농기록, 경작사실확인서, 주업농의 요건확인 등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쌀직불금 신청자는 전년도 신청내역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영농기록, 경작사실확인서, 주업농의 요건 확인 등 관련서류제출을 생략토록 함	○직전연도에 쌀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하였던 자가 직불금 지급 신청 시 직전연도와 자격 요건이나 경작농지 현황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이미 제출하였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는 등 농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밭농업직접지불제사업

구 분	담당자	전화번호
밭농업 직불제 정책상담	사무관 이석기	044-201-1778
지자체 업무담당자 상담	사무관 정영수	044-201-1781
밭농업 직불제 민원상담	밭농업 콜센터	1670-800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3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밭농업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밭작물 재배농가의 농가소득보전

- '12년 운영성과 분석 후 '13년 성과목표치 설정 추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합 계	-	-	62,365	72,577	72,577
국 고	-	-	62,365	72,577	72,577
지방비	-	-	-	-	-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농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이하 '공부상 밭[田]'이라 한다)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다음 농지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①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②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③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④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단, 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⑥ 규정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⑦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

⑧「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법상 임대(사용대)가 불가한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사용대)한 농지로 관계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농지.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96년 이후 취득농지 중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농지법 23조)>
① 상속 받은 농지(1ha까지), ② 8년이상 자경후 이농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1ha까지), ③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영농여건불리농지, ④ 질병, 취학, 징집,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임대시, ⑤ 60세 이상 고령농이 5년을 초과하여 자경한 농지 등

2. 지급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③ 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밭농업에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것을 말함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같은 시기에 농지를 분할하여

경작하는 때에는 신청자 별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밭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 포함) 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로 동계와 하계로 시기를 나누어 경작하는 때에는 공동 소유(경작)자간 합의를 통해 동계, 하계 중 시기를 선택하여 연간 1회만 신청 가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신청자격

○ 규정 제40조의3에 따른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규정 제40조의4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지원대상

○ 대상품목

동 계	하 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연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 대상품목 재배면적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 같은 시기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

- 동일 필지라도 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을 심거나 농지의 일부를 휴·폐경하는 경우 타 품목 재배면적, 휴·폐경면적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 한 필지 내에서 같은 시기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혼·간작시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점유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며, 지급대상 면적은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점유 비율에 따라 산출

○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 예 : 동일 필지내에 동계에 밀을 재배하고 하계에 콩을 재배하는 경우, 밀과 콩 중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에 대해서만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 전년도에 대상품목을 식부하여 다음연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의 경우 수확년도를 기준으로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시설을 말함

-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포함하지 않음

5.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요건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 화학성분 기준

6. 지원형태 및 기준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농업법인 10만제곱미터

-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만 제곱미터,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 제곱미터로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설명회 등 개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간담회 개최, 동계영농교육 등을 통한 홍보

농업인등 : 등록신청서 제출 및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 등록신청

○ 밭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

- 등록신청 기간 : (동계) 2013. 3. 2. ~ 2013. 3. 23일
  (하계) 2013. 5. 1. ~ 2013. 6. 15일
- 동계작물 등록신청 기간 중에는 동계작물 만을, 하계작물 등록신청 기간 중에는 하계작물 만을 등록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의 동계, 하계 작물 구분에도 불구하고 작부체계 상 특수성이 있어 아래 구분에 맞지 않는 품목이 등록신청일 현재 재배중인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등록신청을 받을 수 있음.

동 계 작 물	하 계 작 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등록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 단, 농촌 외의 주소를 둔자의 경우 첨부서류를 갖추어 제출

* 읍·면·동에서는 농업인등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방법 소개(전화, Fax, 직접방문 등)

- 경작농지가 같은 시·군·구(자치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 등록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농지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장에게 등록신청

- 농촌외의 주소를 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다만,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연접 허용 안함)

⇒ 면적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 등록 신청하는 직전 연도 또는 당해연도 판매금액

⇒ 등록신청자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서류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 제출

- APC 에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 전산출력물·대금입금 내역 영수증
- 농산물을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APC 공식기관명의 직인 찍힌 확인서
- 행정기관 또는 농협에서 발행한 밭작물 매입실적
-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영수증 등
- 농산물 구입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간이 영수증은 제외

㉰ 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군·구(현재 주소지)에 두고,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1천제곱 미터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2년 이상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2년 이상 경작 증명서류 : (신청자 명의)밭작물 판매 영수증, 밭작물 등 계약재배 영수증, 2년 이상 경작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농지소재지 거주자 3명 확인) 등

○ 읍·면·동장은 농업인등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지 소재지에 접수할 때에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여부 확인을 위해 밭농업 보조금 등록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나. 이의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이행점검결과 통보 : (동계) 2013. 6. 16. ~ 2013. 6. 20일
(하계) 2013. 10. 1. ~ 2013. 10. 5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별지 제18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동계) 2013. 6. 21. ~ 2013. 7. 4일
(하계) 2013. 10. 7. ~ 2013. 10. 20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농업경영체(AgriX)등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방법

등록신청서제출 (경영체)	○ 등록대상은 경영체 미등록자, 창업·후계경영체 등 ○ 신청서는 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
↓	
신청서접수 및 전산등록 (사무소)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 등록번호 부여 ○ 경영체등록 상시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등록통지서발급 (사무소)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통지서 발급
↓	
이의 있는 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제출 (경영체)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요청(서면, 전화)
↓	
변경등록 (사무소)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	
변경등록통지서발급 (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통지서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방법(농업경영체콜센터 : 1644-8778)

변경등록신청서제출 (경영체)	○ 신청대상은 등록정보 중 중요정보가 변경된 경영체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
↓	
신청서접수 및 전산등록 (사무소)	○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하여 신청정보 지도안내 ○ 이상있는 신청정보는 경영체 동의를 받아 변경등록
↓	
변경등록통지서발급 (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통지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통보
↓	
이의 있는 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제출 (경영체)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요청(서면, 전화)
↓	
변경등록 (사무소)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	
변경등록통지서발급 (사무소)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통지서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2. 등록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및 정보공개 단계

가. 등록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읍·면·동장

○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 (동계) 2013. 3. 2. ~ 2013. 3. 23일
(하계) 2013. 5. 1. ~ 2013. 6. 15일

○ 등록신청서 전산 입력기간 : (동계) 2013. 3. 2. ~ 3. 27일
(하계) 2013. 5. 1. ~ 6. 23일

- 등록신청서 입력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담당자

○ 등록신청서 접수 시 확인사항 :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등록신청서의 항목별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구비 여부

나.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 여부 확인

다. 지급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①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 등록신청서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괄 확인 예정

②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③ 등록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라. 농촌외의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의 증명, 등록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및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마. 등록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 정보공개 기간 : 하계작물 등록신청 전산마감 종료 후 30일이내

○ 정보공개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

* 열람방법과 개인정보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 대상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추가 등록신청한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이행점검 기관에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지급대상자 선정단계

지자체(읍·면·동)

가. 현지(서면)조사 및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실시

○ 조사 및 심사기간 : 등록증 발급 전 까지

○ 서면조사 등

-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이 밭농업에 종사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같은 시·군·구 내에서 2개 읍·면 이상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거리 등을 고려 농지소재지 읍·면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심사위원회 심사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해당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촉할 수 있다.

・밭농업보조금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임기 : 2년(재임 가능)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사항은 집중 심사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등록신청자의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계) 3.31일 까지, (하계) 6.28일까지 제출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가.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증 발급 : (동계) 2013. 3. 31일까지, (하계) 2013. 6. 28일까지

○ 발급요건 : 등록신청서에 대해 읍・면・동장이 AgriX에서 확정을 완료한 경우

-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
- 지급 대상자의 적격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하지 못함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5호 서식) 발급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지급대상제외자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고, 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별지 제7호 서식)

○ 등록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로 등록신청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지자체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등록신청자가 지급대상자 명부에서 누락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 명부에 추가로 등록하고, 그 등록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추가등록 건별로 사유서 1부, 이행점검결과 출장자 서명이 포함된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행점검 기간 종료 전 제출하여야 함.

- 신청농가의 대상품목 재배여부, 재배면적, 공부상 지목 일치 여부 등 점검

- 등록증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전화녹취 및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신청인이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수확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자의 현지조사 확인으로 갈음하고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확인(국세청)
◈ 지번 확인 등을 통해 중복신청, 신청 면적, 주소 등 최종 확인

⇒ 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산시스템에서 확정 및 관인 날인(생략 가능), 읍·면·동에서는 등록증을 출력하여 농업인등에게 발급

·등록증은 향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 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함

나.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

○ 의뢰 기간 : (동계) 2013.3.31일 까지, (하계) 2013.6.30일 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AgriX시스템에 사업대상 농지(농가)를 확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해당 사무소에 이행점검을 시스템으로 의뢰

4.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단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표본농가 선정 및 대상품목, 면적확인 등 현지 조사

○ 등록된 농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표본농가를 선정(모집단의 50% 이상)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달

* 표본농가 선정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함. 다만, '13년도 신규 신청지는 선 순위로 조사하고, '12년도 직불금 지급대상지는 후 순위로 표본 조사(표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의심 가는데 중심으로 샘플 선정)

○ 점검기간 : (동계) 2013. 4.1 ~ 6.15일, (하계) 2013. 7.1 ~ 9.30일

○ 점검대상 농지 : 밭농업직불제 신청농가 중 표본으로 선정된 농가의 농지

- 농관원 지원 또는 시·군 사무소는 AgriX 입·출력 담당자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AgriX시스템으로 전송 받은 사업대상 농지(농가)의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별지 8호 서식)를 출력하여 현장 점검

* 농지가 관할지역 내인 경우는 대상농지 현지조사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농지가 관할지역 밖인 경우는 농지 소재 사무소 출력 의뢰 → 관할 사무소는 대상농지 현지조사 → 조사결과는 의뢰한 사무소에 통보 → 조사결과 전산입력 및 확정

○ 점검사항

- 등록 신청서의 지목, 품목, 재배면적에 대한 현지 확인 등

* 실 경작이 의심되는 등록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주 면담 실시

○ 점검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 항공사진 지적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밭농업보조금 신청농가의 대상품목재배여부, 재배면적, 공부상 지목일치 여부 등 점검
- 등록증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밭농업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전화녹취 및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신청인이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수확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자의 현지조사표 확인으로 갈음하고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AgriX시스템에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송
- 입력 결과를 출력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에 보고, 본원에서는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9호 서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약잔류검사(규정제40조의9제2호에 근거)

○ 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잔류검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시·군·별 농약잔류검사 계획을 수립 시행

○ 농약잔류검사 대상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대상품목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약잔류검사 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농약잔류검사 조사표본은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마을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선정

○ 검사기간 : (동계)등록증 발급 후~6.30일,
(하계)등록증 발급 후~10.31일

○ 시료 채취

- 수확 10일전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되 밭의 형상을 감안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하여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을 무작위로 선정

○ 농약잔류검사 방법

- 농약 잔류검사용 시료는 신속하게 관할 분석기관에 송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농약잔류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 종료 후 그 결과를 해당 사무소에 통보

○ 농약잔류검사 결과 판정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농약 잔류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

-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약 잔류검사가 완료된 후 검사 결과를 Agrix에 입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0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관원 사무소로부터 통보된 농약 잔류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필지는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별표1)”에 따라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0호 서식)

○ 기타사항

- 시료수거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시료관리는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시요령」(농관원 예규)에 따라 처리

농업기술센터 : 토양검사(규정제40조의9제2호에 근거)

○ 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가 없는(23개 시・군) 시・군은 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수행
- 농촌진흥청장은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세부시행지침”을 수립・시행
-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계획”을 수립·시행

○ 검사항목 :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 검사기간 : (동계)등록증 발급 후~6.30일,
(하계)등록증 발급 후~10.31일

○ 검사대상 농지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사 의뢰(AgriX시스템으로 전송)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AgriX시스템 입·출력 담당자 지정 운영

○ 토양검사 표본선정

-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 표본 선정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본설계

○ 토양검사 시료채취

-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시료 채취 대상 농지로 선정된 필지에서 시료 채취

○ 토양검사 방법

- 농촌진흥청의 “밭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구 분	유기물 함량 ($g\ kg^{-1}$)	유효인산함량 ($mg\ kg^{-1}$)	치환성칼리함량 ($cmol^{+}\ kg^{-1}$)
일반 농지	11~50	800이하	2.0이하
제주도	- ※	800이하	2.0이하

※ 제주도의 토양특성상 유기물 항목 제외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결과 적용

○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 1차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함
- 2차 토양검사는 1차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포함해서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토양검사 결과 통지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1차 특별관리 및 2차 토양검사 결과를 10.31일까지 AgriX시스템에 입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1호 서식)
- 농촌진흥청에서는 시·도의 검사결과를 취합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 통보시 검사결과를 1차 특별관리, 2차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명단을 통보(특별관리 또는 부적합 농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
  * 1차 특별관리 및 2차 부적합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양관리 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

○ 토양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통보된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명된 농업인에 대해서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별표1)”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이의신청 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밭농업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이행점검결과 통보 : (동계) 2013. 6. 16. ~ 2013. 6. 20일
  (하계) 2013. 10. 1. ~ 2013. 10. 5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별지 제18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동계) 2013. 6. 21. ~ 2013. 7. 4일
  (하계) 2013. 10. 7. ~ 2013. 10. 20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6.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밭농업보조금 소요액을 시・도에 배정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밭농업보조금 지급

○ 지급시기 : 2013년 12월

○ 지급요건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대상품목을 1천제곱미터 이상 재배할 것
-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 금액산정 : 등록된 농지면적에 1만제곱미터당 40만원 기준으로 지급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농업법인 10만제곱미터

-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만 제곱미터,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 제곱미터로 함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송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등록자)의 계좌에 입금
- 통장입금시 농업인이 밭농업보조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밭직불”이라는 용어를 보내는 이 이름으로 반드시 명기
- 필요시 읍·면·동에 자금을 전도하여 계좌에 입금 가능

* 밭농업보조금을 농업인등에게 입금하는 지정 사무소에서는 밭농업보조금 등록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입금 조치

○ 시·도지사는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7. 사업 완료후 관리단계

가. 밭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공개

○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

○ 정보열람 기간 :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 정보열람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 열람자의 의무 : 열람목적 및 개인정보 제공

나. 부당지급된 밭농업보조금의 환수

○ 부당지급금의 환수 : 규정 제40조의10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환수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 신청 참여 제한

○ 납입고지서 :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정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징수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환수절차 :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시·도지사는 밭농업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 실적을 보고(별지 제13호 서식)

다. 사업추진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에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

- 필요할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급면적 초과신청, 타 밭농업보조금 수령자의 중복신청, 지적불일치 필지 등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8. 보고 사항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증 발급 결과(별지 제14호 서식)

  * (동계) '13. 4. 30일까지, (하계) '13. 7. 22일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제외자 현황(별지 제15호 서식) : '13. 10. 31일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요청 (별지 제16호 서식) : '13. 11. 8일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결과(별지 제12호 서식) : '13. 12. 31일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별지 제13호 서식) : '13. 12. 31일까지
-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별지 제17호 서식) : '13. 12. 3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사무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통보)

- 현지조사 결과(별지 제9호 서식) : '13. 10. 15일까지
- 농약잔류검사 결과(별지 제10호 서식) : '13. 10. 31일까지

9. 사업평가(성과측정) 및 환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직불금 지급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평가

○ 사업실적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지침 및 제도 개선 추진

○ 평가결과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자체에 인센티브부여

Ⅳ.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기간 : '14. 1월 ~ 5월

○ 수요조사 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수요조사 농지

- 지급대상농지로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되고 '14년도 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지

2.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4년도 밭농업보조금 지급신청은 (동계)'14. 3월, (하계) '14. 5월, 현지점검 (동계) 4~6월, (하계) 7월~9월, 보조금 지급 12월 예정

○ 신청자격

- 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0.1ha)미만인 경우와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신청자격이 없음

○ 신청절차

- 신청자는 신청서를 작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현지 사정에 따라 마을대표에게 제출 가능), 마을대표는 제출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기재항목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사 업 추 진 절 차

업무흐름	시기(하계기준)	주 요 내 용
① 사업등록신청 *동계작물(3월)	('13.3 ~ 5월)	· 밭농업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구) · 농업인 등은 등록신청서 제출(읍·면·동장) · 읍·면·동 담당자는 Agrix를 통해 등록신청인의 농업경영체등록 사실여부 확인
⇓		
② 신청자 정보 공개	('13.6월)	·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		
③ 신청내용 현지(서면) 조사 및 심사 - 등록증교부 *동계작물(3월)	('13.6월)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적부확인, 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점검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신청내용 점검·보완 · 등록 제한자, 농외 소득자 지급제한(증명서 제출자) 여부 확인(읍·면·동장) · 등록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제외자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		
④신청내용 현지조사 *동계작물(4~6월)	('13.7 ~9월)	·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등록내용의 현장조사 실시(농관원) → 확인조사 결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
⇓		
⑤등록내용 이의신청 *동계작물(6월)	('13.10월)	· 농관원의 이행점검결과 이의가 있는 농업인등은 지자체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조사 요청 및 농관원 재조사 처리
⇓		
⑥ 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보	('13.10 ~11월)	· 지급대상자 확정(시장·군수·구청장)
⇓		
⑦ 보조금 지급 *동계·하계 작물	('13.12)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 입금(시·군·구)
⇓		
⑧ 밭농업보조금 수령자 명단 공개	(익년 1월)	·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및 시·군·구 홈페이지

< 별표 1>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1. 일반기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규정	지급제한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규정 제40조의10제1항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 보조금 전부 미지급	3년
나. 규정 제40조의4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규정 제40조의4제2항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 보조금 전부 미지급	-
2)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등록된 모든 농지의 밭농업 보조금 전부 미지급	
다. 규정 제40조의7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규정 제40조의7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가) 농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토양화학성분 기준		해당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1/2 감액	
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밭농업보조금 전부 미지급	

< 별표 2>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대상 제외 농지 구분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제외 농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이하 '공부상 밭[田]'이라 한다)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안에 있는 농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단, 규정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규정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다만 신청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의 임대(사용대)가 불가한 농지를 임대(사용대)한 농지로 관계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농지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②신청 직불 보조금	③농지소재지 및 공부상 지목·면적					④경영형태 (자경,임차,공유)	⑤신청품목·재배면적(㎡)				
	읍·면	리·동	지번	공부상 지목	면적(㎡)		품목	면적(㎡)			
								논	밭	과수원	초지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⑥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9조, 제40조의5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및 확인 등에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자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⑦ 읍·면·동장 확인란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없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①란은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보조금(밭농업보조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을 선택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농지소재지(읍·면, 리·동, 지번) 및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과 면적을 기록합니다.

④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대상품목과 재배면적을 기록합니다.

⑥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⑦란은 신청인(농업인)의 신청 대상품목, 재배면적, 신청농지・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 공통사항 : 신청인(농업인)의 신청서 기재사항
- 밭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 확인사항
  · 신청농지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여부
- 조건불리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 확인사항
  ·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 신청농지의 보조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나 AgriX시스템, 현지확인 등을 거쳐 확인 함

※ 구비서류

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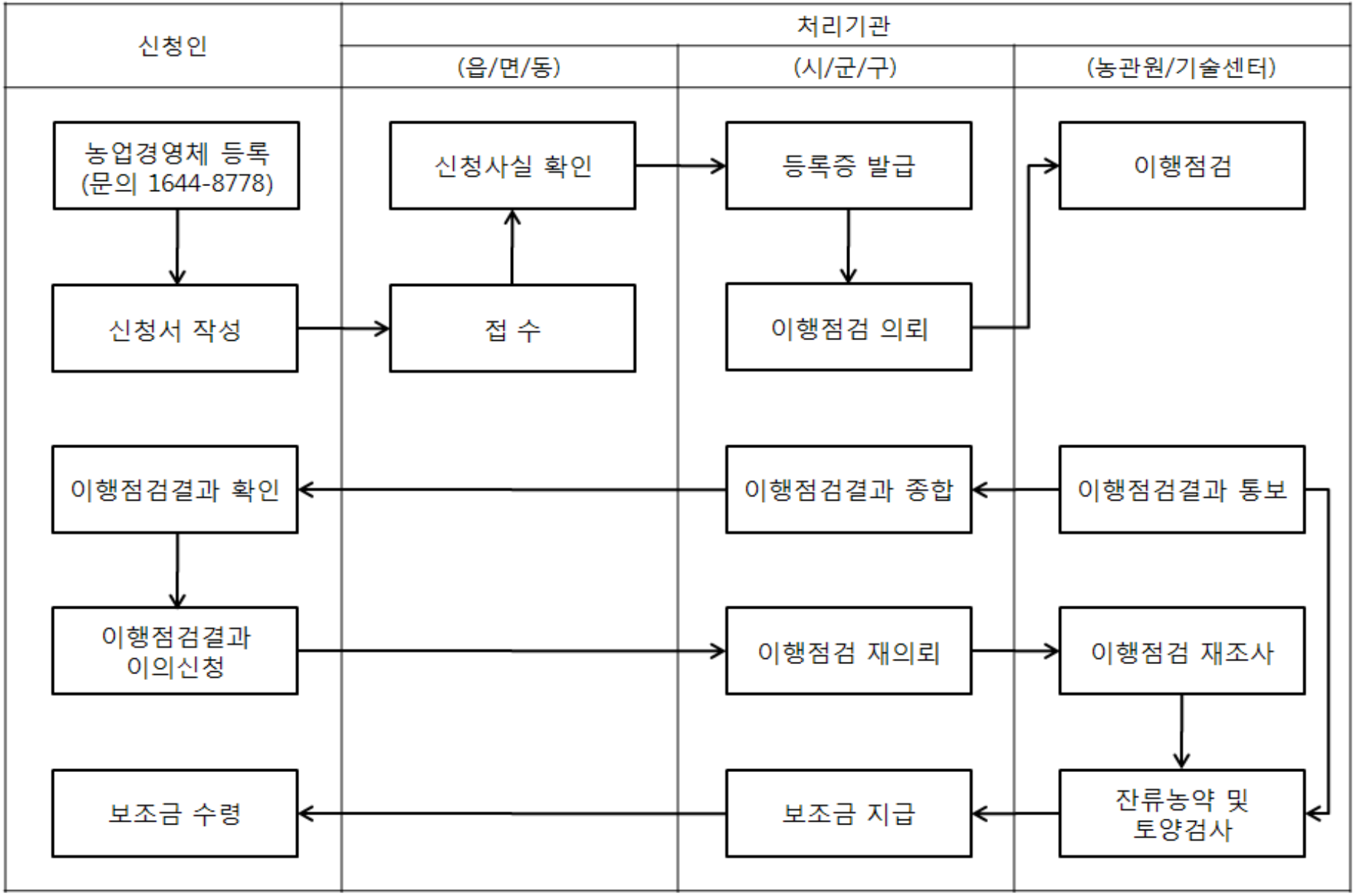

- 136 -

[별지 제2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2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재배품목·이용면적(㎡)	
	읍·면·동	리·통	지번		재배품목	이용면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0조의5에 따라 신청인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경작사실 확인 안내 (뒤쪽)

제출 및 처리기관	읍·면·동, 시·군·구
근거 법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1조 ① (생 략) ② 영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경작사실 확인서. 다만, 타인의 소유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생 략)

※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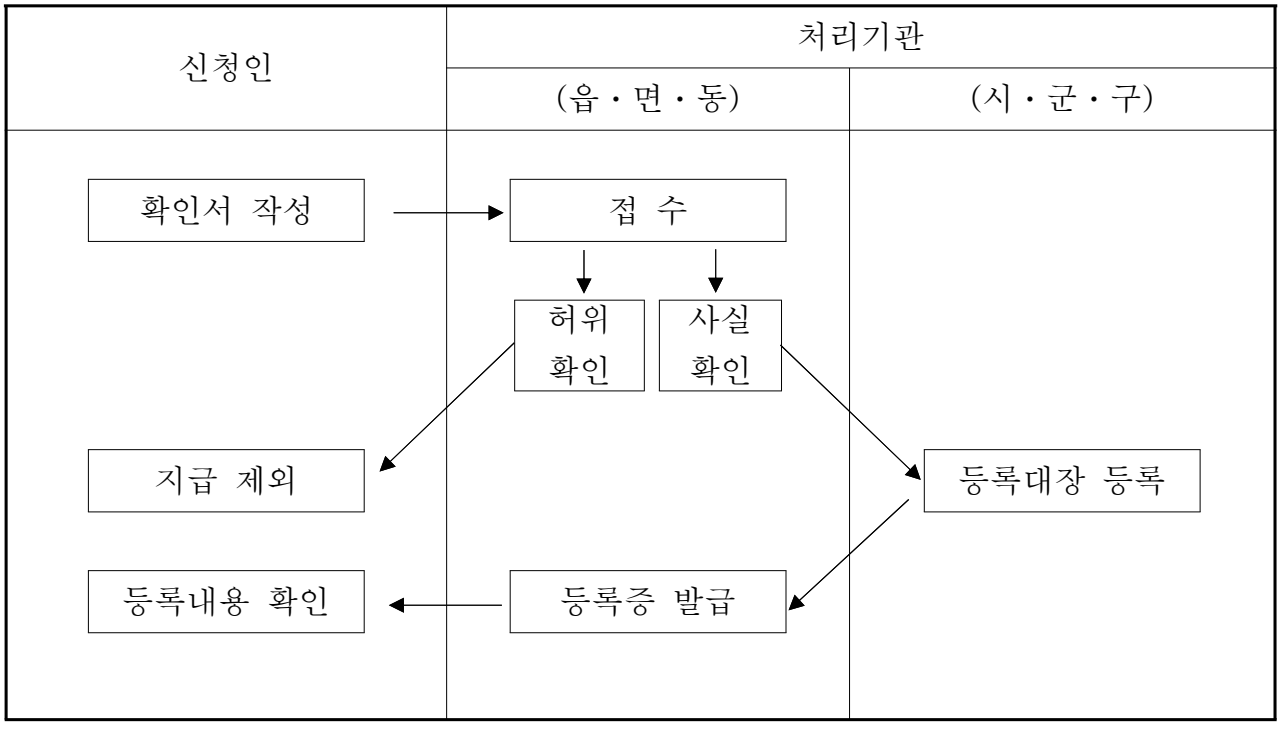

[별지 제4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 번호)	공부상 지목 및 면적(㎡)		재배품목 및 신청면적 (㎡)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지목	면적 (㎡)	품목	면적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		재배품목 및 신청면적(㎡)	
	읍·면	리·동	지번 (임시 지번)	지목	면적(㎡)	품목	신청면적 (㎡)

위 신청인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 및「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대상품목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계)'13.4.26일까지, (하계)'13.7.12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10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 등록증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제외자 대장

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등록신청		제외사유
				품목	면적 (㎡)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②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③ 신 청 내 용	농지 소재지			④농지이용면적 (㎡)			대상농지여부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밭 대상 품목 재배	타 작물 재배	휴경	쌀소득등 보전직접 지불금	친환경 농업 보조금	조건불리 보조금	경관보전 보조금	농지전용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인]
구청장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2013년 밭농업직불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품목	면적(㎡)	조사결과 (품목 및 면적)	비고
법정동명	본번	부번					

※ 품목 및 재배면적 등이 사실과 같을 경우 조사결과란에 “일치”로 기재

3. 신청인(배우자) 확인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불일치된 사항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등록에 동의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배우자) : (인)	연락처 :

4.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 특이사항 기록내용 : 신청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 전화녹취 일시·수화자 성명· 통화내용, 농가면담 사항 등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9호 서식]

이행사항 점검(현지 조사) 결과 보고(통보)

품 목	시·군·구	읍·면·동	등록신청		점검 결과			
					적합(이행)		부적합(불이행)	
			농업인(명)	면적(㎡)	농업인(명)	면적(㎡)	농업인(명)	면적(㎡)
합계								

※ 참고사항(조치 경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사무소장은 불이행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00월 0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인)

[별지 제10호 서식]

농약 잔류검사 결과 보고(통보)

품 목	시·군·구	읍·면·동	등록신청		검사 결과			
					적합		부적합	
			농업인(명)	면적(㎡)	농업인(명)	면적(㎡)	농업인(명)	면적(㎡)
합계								

※ 참고사항(조치 경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 →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사무소장은 불이행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00월 0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인)

[별지 제11호 서식]

토양검사 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점검 대상(농업인)		특별관리 및 부적합 결과		비고
	농업인 (명)	품목재배 면적(㎡)	농업인 (명)	품목재배 면적(㎡)	농업인 (명)	품목 재배면적 (㎡)	
합계					1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2차년도( )	

※ 1ha = 10,000㎡

○ 보고절차

- 농업기술센터 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도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도 농업기술원장 → 시·도지사 및 농촌진흥청장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농업기술원장)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자금배정액 (천원)	지급 면적(㎡)	지급 결과(천원)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시군구	부당수령자 현황			부당수령금 회수 현황			등록제한 현황	
	인원	면적(㎡)	금액(천원)	인원	면적(㎡)	금액(천원)	인원	면적(㎡)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증 발급 결과 보고

시·군·구	등록 현황		경작 현황				임차현황	
	인원	면적 (㎡)	계 (㎡)	대상품목 재배면적 (㎡)	대상품목 이외면적 (㎡)	휴경 (㎡)	인원 (명)	면적 (㎡)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제 등록 제외자 현황 보고

읍·면·동 (시·군·구)	합 계		농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자		1천제곱미터 미만자		농지처분 명령자		무단 점유자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인원 (명)	면적 (㎡)
합계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읍·면·동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자금 요청

사군구	지급대상자 (명)	지급대상 면적(㎡)	소요 자금(천원)
합계			

※ 1ha = 10,000㎡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제한 실적 보고

시군구	합 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지급대상자 요건 미흡		재배품목 불일치		농약토양검사 부적합	
	인 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인원	면적 (㎡)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품목	면적(㎡)	조사결과 (품목 및 면적)	비고
법정동명	본번	부번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밭농업 직불제 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구 분	담당자	전화번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정책상담	사무관 이석기	044-201-1778
지자체 업무담당자 상담	사무관 정영수	044-201-17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5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4호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장

3. 성과목표 및 지표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해당 지역 공동화 예방 등 지역활성화로 '13년에도 정주농 비율 98.5% 유지

성과지표	2013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0	'11	'12		
▪ 정주농비율(%)	98.5	99.0	98.6	99.0	12월말	지원대상 법정리의 최근 5년간 평균 정주농 비율 대비 당해년 정주농 비율(Agrix에서 확인) *정주농비율=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년	2012년	2013	2014년이후
합 계	59,241	54,690	54,179	49,170	49,170
국고보조	41,745	38,762	43,560	39,511	39,511
○ 조건불리보조금	58,312	53,093	53,094	48,294	48,294
- 국고보조	40,816	37,165	42,475	38,635	38,635
- 지 방 비	17,496	15,928	10,619	9,659	9,659
○ 행정비(국고)	929	1,597	1,085	876	876

* 2014년이후 계획은 2013년의 예산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작성함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지역

○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이라 한다)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음)

※ 2012년 전국 읍·면지역 법정리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를 대상으로 지급(동(洞)지역은 도서(島嶼)를 불문하고 모두 제외)

2. 사업대상 토지

○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법」 제2조 상의 농지 및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로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된 초지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토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04 ·' 05년 시범사업 지역은 '02년부터 '04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로 관리된 초지이어야 함.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 보조금 지급전까지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전용 또는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토지. 다만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 없이 영농이 가능하다고 읍·면·동장이 확인한 농지는 지원 가능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토지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

◆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뽕나무·유실수 그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이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

◆ 임야에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 재배에 이용되는 임야는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원 제외

◆ 초지법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농지법상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불가한 농지('96년 이후 취득농지 등)를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 '96년 이후 취득농지 중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농지법 23조)〉

① 상속 받은 농지(1ha까지), ② 8년이상 자경후 이농한 농가가 소유한 농지(1ha까지), ③ 60세이상 고령농이 5년을 초과하여 자경한 농지, ④ 질병, 취학, 징집, 공직취임 등의 사유로 임대시 등

3. 지원자격 및 지급요건

○ 지원자격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단, 농지 또는 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지급요건 :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활성화 실천 의무는 마을여건 등에 따라 1개 이상 자율 이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인의 소득보조,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활동에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및 지원기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고 80%, 지방비 20%

○ 지급단가[1] : 논·밭·원 50원/㎡, 초지 25원/㎡

*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25원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 이상(지원대상 동일 읍·면내 농지면적)

1) 지급단가는 조건불리 지역과 일반 지역에서의 농업소득 차의 일정수준을 보전해 주는 선에서 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조건불리지역(사업대상 지역) 선정 및 통보

한국농어촌공사

○ 시·도에서 제출받은 법정리별 경지율 자료와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를 분석한 법정리별 경사도 자료, 법정리 변동 자료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 자료를 제출하고, 근거자료는 보관(1월)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AgriX 유지보수단에 통지(3월초)

AgriX 유지보수단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지한 법정리에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지자체에서 사업신청서 등을 Agrix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3월말)

시·도, 시·군·구, 읍·면

○ 시·도지사는 '조건불리지역'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 통지(3월초)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을 읍·면장에게 알리고, 읍·면장은 해당 읍·면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읍·면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법정리 또는 행정리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3월말까지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하고 농업인 등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공고에 포함할 내용(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5조제3항관련)>

◆ 해당 읍·면의 조건불리지역(법정리·행정리) 및 변동사항
◆ 보조금 신청대상자, 지급대상 토지,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업신청 단계

마을(법정리 또는 행정리), 읍·면

○ 조건불리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하 한다)이 정함

○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와 마을발전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3월말까지)

- 시·군(읍·면)에서는 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마을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Agrix 출력물)를 해당 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3월초)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의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작성을 지도·협조
* 마을발전계획에는 지역현황, 향후 5년간 마을발전목표 및 추진 계획 등을 포함
* 민통선 안, 섬지역 등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지원대상 법정리는 해당 읍·면 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마을 농지로 출입 영농하는 농업인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거주지가 아닌 농지소재 마을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4월말까지)

- 시장·군수는 마을발전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참여 의지, 표고,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하되, 마을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민참여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대상 마을에서 제외 가능

3. 사업자 선정 단계

농업인등·운영위원회

가. 등록신청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의 농업인등은 '조건불리·밭직불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본인이 직접 작성 서명(대리 작성시도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운영위원회에 제출

〈 약정신청서 구비서류 〉

◆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 임차/사용차 농업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농업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 마을대표의 확인서는 불인정

◆ 읍·면장(임대차)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는 개인간 임대차/사용대차가 가능한 농지 중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
- 농지임대차 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농지사용대차 계약서<별지 제11호 서식> 예시 참고

- 보조금을 기 지급받은 농업인등은 시·군(읍·면)으로부터 기 등록된 내용을 전산출력한 '약정신청서'를 배부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수정·서명후 제출

* 약정신청서에는 공부상 면적, 신청제외 면적(묘지, 창고, 유휴지 등 미경작 면적), 신청(실경작) 면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 약정 신청전에 농지원부(조사용),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 사본을 출력하여 위원장에게 제공하고, 농가의 약정신청서 작성에 참고토록 협조

○ 위원장은 약정신청서의 기재항목 누락 및 신청인 서명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를 현장확인 후 신청인의 공람을 거쳐 위원장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 제출기한 : 2013.5.1 ~ 2013.6.15일까지
- 위원장은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등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신청(실경작)면적 등 사실여부 현장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

* 현장확인은 운영위원 활용, 별도 인력 고용 등 여건에 맞게 실시하고, 경비는 마을공동기금 사용 가능

나. 이의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이행점검결과 통보 : 2013. 10. 1 ~ 2013. 10. 5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2013. 10. 7 ~ 2013. 10. 20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읍・면

(가) 서류 구비·보관

○ 읍·면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유무 및 토지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제출자료 및 전산자료 등)를 구비·보관

○ 기 지원자로 변경사항이 없으면 전산 출력한 약정신청서만 구비·보관

(나) 구비서류와 전산자료(Agrix)를 활용한 확인 및 입력

○ 보조금 신청인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신청인 정보 입력

- 임대차계약서, Agrix의 G4C 등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수탁영농 여부 등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 정보 입력

○ **보조금 신청 토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정보 입력**

- 처분대상농지, 전용농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농지 등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여부를 Agrix(또는 서류)로 반드시 확인하고 농지정보 입력
-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경우, 공부·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확인
- 신청농지(초지)의 이용(관리) 현황, 소재지, 면적 등은 구비서류, Agrix의 토지대장 등을 통해 대조 확인하고 농지정보 입력

○ **농업경영체 등록제 참여 여부 확인**

- Agrix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등록 후 신청토록 조치

시·군·구

○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되면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로 읍·면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림(6월말까지)

* 관리협약 체결시, 관리협약 이행표<별지 제6호 서식>,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위원장에게 송부

*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 통보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함

○ AgriX시스템에서 사업대상 농지(농가)를 확정하고 등록된 농지 등 이행사항 점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당 지원 및 사무소에 시스템으로 의뢰(6월말까지)

<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 절차>

◆ **농업인등** :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운영위원장을 경유, 읍·면장에게 지급약정 변경을 신청(9월말까지)

◆ **읍·면** : 지급약정 변경신청인이 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 농지가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토지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시장·군수에게 보고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행점검 반려를 요청하여 변경내역을 수정 입력 후, 재의뢰

◆ **시·군** :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읍·면장, 운영위원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

- 보조금 지급전에 제세행정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소유권이전 등 소유권 변경여부를 최종 확인
- 농지의 경영을 양수하는 자는 당초 선정된 지급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 이 경우 보조금은 지급대상자 확정시점(각 시행년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자로서, 지급대상자 변경 승인을 받는 자에게 지급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위원장은 지급대상자의 합의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라 한다)<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운영위원은 '관리협약' 작성, 마을공동기금 관리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

<관리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시행규정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 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시 제출한 마을발전계획 내용과 연계하여 관리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4.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이행점검을 총괄하고,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시・도

○ 시·군의 이행점검을 지도·감독하고, 부당수령자가 발생한 경우 등 보조금 부당수령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군간 교체 점검계획을 세워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이행점검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Agrix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이행점검 완료를 전산 보고(10월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지관리의무(필수의무)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한다.

◆ 보조금 지급개시 년도부터 사업기간동안 대상 농지(초지)를 계속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 농지관리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생산을 하거나, 작목은 재배하지 않았어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을 실시하고, 잡초제거 등으로 밭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거나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에도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표본농가를 선정(모집단의 30%이상)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달

  * 표본농가 선정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함.

○ 점검기간 : 2013.7.1 ~ 9.30일 까지

○ 점검대상 농지

- 실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 여부, 목장·산림 등 일부경작 농지(초지)임에도 공부상 면적 전체로 신청 여부, 미재배 농지 경운, 잡초제거 여부 등 현지 확인

○ 점검사항

- 실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 여부, 목장·산림 등 일부경작 농지(초지)임에도 공부상 면적 전체로 신청 여부 등 현지 확인

* 실 경작이 의심되는 등록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주 면담 실시

○ 점검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세부점검계획 수립
- 항공사진 지적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신청 농지의 면적 등 점검
- 신청 내용과 현지점검 결과가 다를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현지 조사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하고, 부재시에는 전화녹취 및 현장자료로 사진 확보

○ 점검결과 입력 : 점검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

- 점검결과를 AgriX시스템에 항목별로 입력한 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 및 전송

○ 점검결과에 대한 수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점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이 AgriX시스템에 재조사 요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수정 입력 후 확정

시·군·구

1)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 위원장이 제출한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및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를 참고로 지급요건의 이행 여부 점검

- 의무 불이행 사례 발견 시 운영위원장 또는 경작자의 확인서 입수

-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 점검결과 지급요건 이행 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고,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가) 마을공동기금 조성(필수의무) 및 적정관리 여부 확인

○ 마을별 연 2회 이상 점검하되,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 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및 집행 상태 등을 점검·지도

○ '09년 혹은 '10년에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전부 사용시까지 마을별 연 1회 이상 집행 상태 등을 계속 점검·지도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사용 불가)

◆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당년 마을공동기금의 10% 또는 당년 기금 중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마을활성화 비용으로 자율적 집행 가능(운영위원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게 사용)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08년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주민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후 5년간 보관)

-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 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최소 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기금을 엄격히 관리

(나) 마을활성화 실천(1개 이상 의무이행) 등 이행여부 확인

○ 마을에서 제출하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표'를 참고로 시장·군수와 체결한 관리협약의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이행 여부 점검

※ 마을발전계획에 따라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예시)>

◆ 마을활성화 실천 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마을 소득작목 개발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 농용지 보전 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 지역마켓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 · 지게차 · 선별기 등 공동 생산 · 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 · 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마을공동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 소모성 경비지출이 당해연도말 기준 마을 공동 기금 총 예상잔액의 30%를 넘지않도록 함

※ 지역특색에 따라 시 · 군에서 마을공동기금 조성 취지의 범위내에서 추가 가능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이행점검결과와 마을 공동기금 조성, 마을 활성화실천여부 등 점검 내역을 Agrix를 통해 시·도에 전산 보고 (10.25일까지)

읍・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점검 결과 등을 확인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 또는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 마을 자체이행점검단이 제출한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또는 별도 작성한 지급대상 토지의 지번별 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실시
- 농지별 일부 면적 제외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반려를 요청하여 수정 입력후, 재의뢰

* 읍・면에서는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이행점검표<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6-1호 서식>을 Agrix에서 출력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마을(법정리・행정리)

○ 위원장은 자체 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책임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별지 제6호 서식> 및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별지 제6-1호 서식>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9월말까지)

5. 이의신청 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 신청인에게 이행점검 완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이행점검결과 통보 : 2013. 10. 1 ~ 2013. 10. 5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 기간 : 2013. 10. 7 ~ 2013. 10. 20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6.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단계

읍·면

○ 이행점검결과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 또는 토지는 Agrix에서 부적격 처리

시·군·구

○ 시장·군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확인 등 이행점검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별 이행 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자 명단, 대상 면적 등을 최종 확정하여 시·도에 이행점검 완료 전산 보고(10.20일까지)

7. 자금배정, 보조금 지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이행점검 완료 보고 후 Agrix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기준으로 보조금 교부 확정 및 교부(천원미만 올림)

* Agrix를 통한 행정처리 간소화 등을 위해 별도 공문시행 없이 보조금 결정 및 교부

시·도

○ 시·군의 이행점검 완료 보고에 따른 Agrix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기준으로 시·군에 보조금 배정

시·군·구

○ 보조금 산정기준 및 제재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급대상자별 지급금액을 신청인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계좌에 입금 처리

- 보조금 산정기준 : 지급단가(㎡당 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에 지급대상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

  * 신청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는 시장·군수가 사유를 확인한 다음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지급

- 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의 공동기금 조성비율에 따라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입금

  * 보조금을 시·군의 예산으로 편성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금 등 적절한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8.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1) 대상자 관리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토지의 경작자가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정연도를 포함하여 사업시행기간(5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2) 제재

○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시장·군수는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아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지급요건 불이행 누적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의 처분을 받게된 농업인등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참여를 제한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불이행	◦ 1차 :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차 : 보조금 지급중단(5년간)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불이행	◦ 1차 : 경고 ◦ 2차 : 마을기금 최소 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 3차 :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지급 중단(5년간)

※ 면책기준 : 자연재해의 경우, 농업인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농지가 토지수용을 받는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면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가는 향후 5년간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해당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

구 분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1회 적발	◦ 경고
	2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 최소규모(전체 보조금의 20%)의 50% 감액
	3회 적발	◦ 마을공동기금액 지급 중단(향후 5년간 공동기금 지급 중단)

9. 보고 사항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Agrix 보고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 보고)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 8월말까지<Agrix 별지 제7호 서식>
-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 : 10월말까지<Agrix 별지 제7호 서식>
- 보조금 지급(정산) 결과 보고 : 익년도 1월말까지(Agrix 별지 제8호 서식>

10.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 후 마을 정주농 제고율(%)

- 측정방식 =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

* 사업 해당 년의 정주농 비율〔 = 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을 최근 5개년의 평균 정주농 비율로 나누어 산출하되,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 Agrix 사업신청서에 입력된 농가수를 토대로 성과지표 산출 및 평가

<만족도조사>

○ 지자체 담당자,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PCRM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제도개선 및 사업시행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보조금 지급 이후(11월~12월)
- 조사대상 : 지자체 담당자,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업인등

Ⅳ. 2014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 사항

1. 2014년도 사업수요조사

○ ‘13년 사업신청 및 보조금 지급면적, 미지원 법정리(마을) 중 ’14년 사업추진 가능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면적 추정

2. 수요조사 방법 및 홍보

○ 농지전용 등으로 인한 연평균 대상지역 감소면적 등을 감안, ’14년 사업 추진가능 면적 파악

○ 담당자에 대한 시행지침 교육 및 농업인에 대해 리후렛 배포, 반상회보 활용 홍보

3. 2014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3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조건불리지역 선정 방안

- 보조금을 5년간 지원한 법정리는 2013년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에 적합한 법정리만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

※ 현행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시(市)의 동(洞)지역 도서(島嶼)는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의 선정, 지급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이행상황점검 결과, 보조금 지급액 확정, 보조금 지급(정산)결과 보고 등의 업무처리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처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 <별지 제1-1호 서식> : ○○리 마을발전계획서(예시)

◇ <별지 제2호 서식> : (조건불리·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 <별지 제2-1호 서식> : (조건불리·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 등록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 <별지 제4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 <별지 제5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대상 □ 대상 변경) 확인결과

◇ <별지 제6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20 년)

◇ <별지 제6-1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20 년)

◇ <별지 제7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 선정 □ 확정) 결과

◇ <별지 제8호 서식>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도)

◇ <별지 제9호 서식> : 읍·면장 임대차 확인서

◇ <별지 제10호 서식> : 농지임대차계약서(예시)

◇ <별지 제11호 서식> : 농지사용대차계약서(예시)

◇ <별지 제12호 서식> : 조건불리보조금 현지조사표(농관원)

◇ <별지 제13호 서식> : 이행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

1.대상지역	시·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지역현황 (예시)	인구수(명)		남자		여자							
	가구수(호)		농가		비농가							
	경지면적(ha)		논		밭		과수원					
	초지면적(ha)											
* 성과지표 작성 (매년입력)	'13 농가수(호)	총	증감원인	사망		이주		기타				
	정주농 비율(%)		*자동계산('13정주농비율/최근 5년간 평균정주농비율)×1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농가수(호)											
3.지역자원			마을내		마을외(차량10분)		기타					
	마을 또는 지역 상징물 (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자연자원 (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문화자원 (유형·무형 문화재 등)											
4.지역특산품 (예시)	친환경인증농산물				지역특산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운영위원회 주 소 : (전화 :)

위 원 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 : ○○리 마을발전계획서 1부

* 법정리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지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명을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리 마을발전계획서(예시)

1. 대상지역 : 시·도 시·군·구 읍·면 리(행정리)

2. 지역현황

(1) 인구 및 가구수

(단위 : 명, 호)

인구수						가구수		
계		남자		여자		계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 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의 세부특징을 설명

(2)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구분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남자				
여자				
계				

▪ 연령 측면에서 지역농업의 문제점이나 지역유지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간략히 설명

(3) 경지면적

(단위 : ha)

총면적	답			전			과수원			초 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활용	미활용

▪ 농경지 활용측면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장점을 간략히 설명

(4) 주요 재배작목별 면적 및 생산량 현황(재배면적이 큰 작목부터 기입)

(단위 : ha, M/T)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작목명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 지역의 주요 재배작물 및 특수 작물의 재배현황 및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있는 경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5) 농기계 보유 현황

(단위 : 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동력 방제기	건조기	관리기	파종기	…	…

▪ 농기계 보유현황과 실제 작업에 활용되는 정도를 간략히 설명

(6)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		소형관정	도수로	…
동	면적	동	면적	개	미터	…

▪ 농업경영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실태 및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

(7) 생활환경 현황

구분	마을 주택노후도 비율			도로 이용 여건(해당란에 ○표 할 것)		
	상	중	하	양호	보통	불량
비율	%	%	%			

▪ 지역의 주택 노후화 정도를 설명하고 도로 이용환경을 간략히 설명

▪ 지역 내 빈집(공가) 수 :

(8) 의료 및 시장이용 현황

○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의료시설 및 이용현황

○ 연쇄점, 상설시장, 대형할인점 등 이용현황

(9) 교육복지, 문화시설 이용 현황

(단위 : 개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을복지회관	도서관	…

▪ 지역 내 교육·복지 환경을 간략히 설명

3. 지역자원

○ 마을 상징물(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

○ 자연자원(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

○ 문화자원(유형·무형문화재) :

○ 기타 마을 고유의 자원 :

4. 지역특산품 등

○ 친환경인증 농산물 :

○ 지역특산품 :

○ 기타 :

5. 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조직명	조직구성	모임횟수	등록일시	주요활동내역	비고
영농회 청년회 :	○ ○ 명	○ 회/월			

▪ 지역공동체 및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 내 각종 공동체를 표시하고,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

6. 마을 발전 계획

○ 발전목표 설정

(예 : 친환경농업마을, 전통문화마을, 농촌관광마을 등 자체개발)

- 발전목표 설정 이유
- 마을내 지역특화 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시·군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를 통해 작성

○ 향후 5년간 추진계획

-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
-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마을기금 활용 계획

- 마을주민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이 조성될 경우 투자계획을 작성

○ 마을 발전계획 작성 경과

- 계획작성 과정의 주민참여 활동(마을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

※ 작성요령
- 마을발전계획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직접 작성
- 필요에 따라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상세히 설명
- 계획서는 본 시행지침에 주어진 양식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작성
- 기 작성 제출된 경우는 실행여부 점검, 새로운 내용과 미진한 사항 보완

<별지 제2호 서식>

(제1쪽)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②신청 직불 보조금	③농지소재지 및 공부상 지목·면적					④경영형태 (자경,임차,공유)	⑤신청품목·재배면적(㎡)				
	읍·면	리·동	지번	공부상 지목	면적(㎡)		품목	면적(㎡)			
								논	밭	과수원	초지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⑥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제29조, 제40조의5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및 확인 등에 필요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국세청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자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⑦ 읍・면・동장 확인란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없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①란은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보조금(밭농업보조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을 선택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농지소재지(읍·면, 리·동, 지번) 및 신청농지의 공부(公簿)상의 지목과 면적을 기록합니다.

④농지 소유를 기준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 본인을 포함한 공동소유의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기록합니다.

⑤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대상품목과 재배면적을 기록합니다.

⑥란은 신청인의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록합니다.

⑦란은 신청인(농업인)의 신청 대상품목, 재배면적, 신청농지·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 공통사항 : 신청인(농업인)의 신청서 기재사항
- 밭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 확인사항
  · 신청농지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여부
- 조건불리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 확인사항
  ·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 신청농지의 보조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나 AgriX시스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확인 함

※ 구비서류

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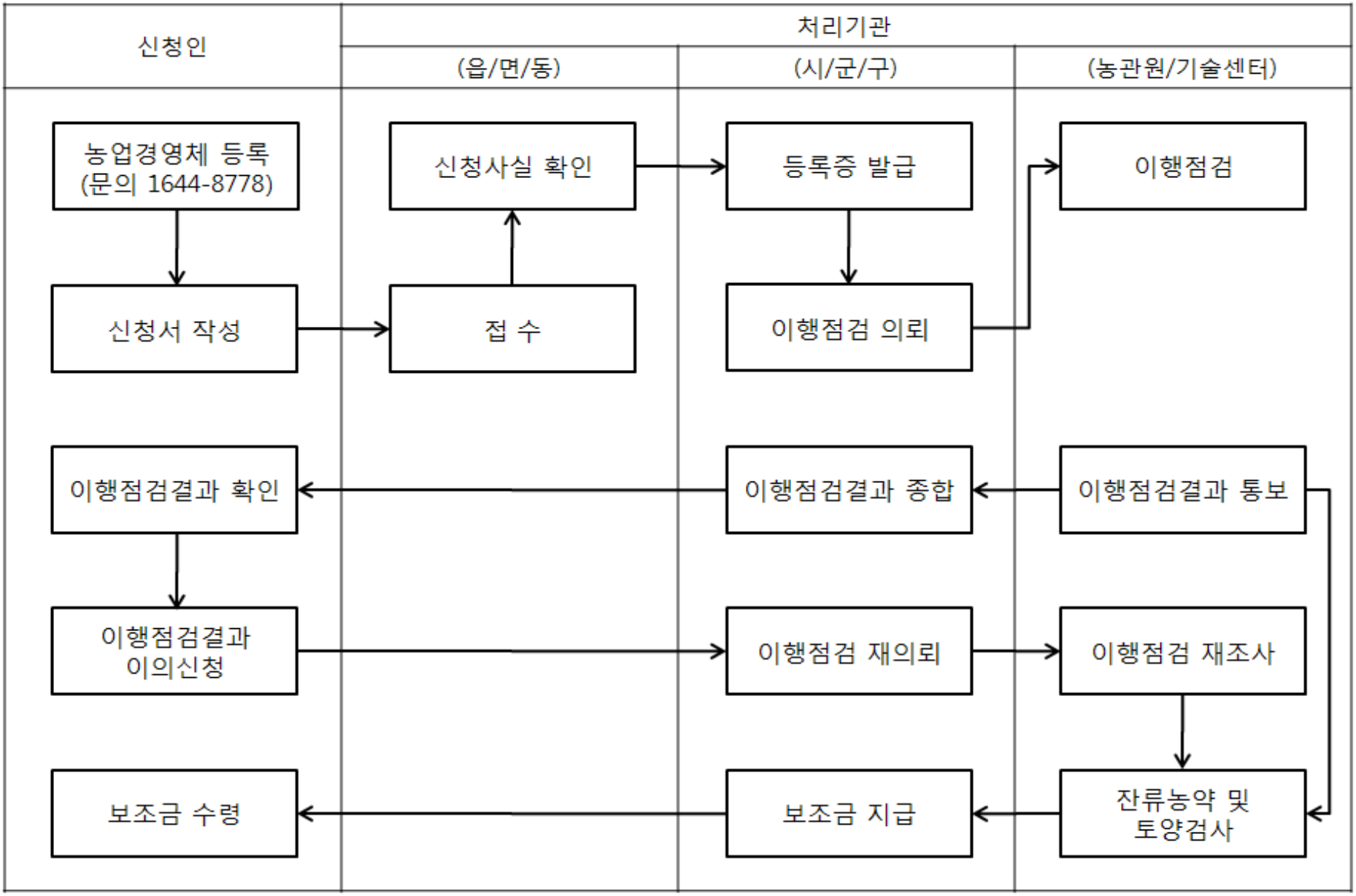

<별지 제2-1호 서식>

(제1쪽)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소	

②신청 직불 보조금	③농지소재지 및 공부상 지목·면적 등						④변경 전					⑤변경 후				
	읍·면	리·동	지번	공부상 지목	면적(㎡)	경영 형태	품목	면적(㎡) 논	밭	과수원	초지	품목	면적(㎡) 논	밭	과수원	초지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밭농업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⑥ 읍・면・동장 확인란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수령금액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개됩니다.

수수료
없음

※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제2쪽 참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①란은 밭농업·조건불리 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의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보조금(밭농업보조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을 선택합니다.

③란은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보조금(밭, 조건)의 농지소재지, 공부상 지목, 면적, 경영형태(자경, 임차, 공유)을 기록합니다.

④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전 품목, 면적을 기록합니다.

⑤란은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지의 변경 후 품목, 면적을 기록합니다.

⑥란은 신청인(농업인)의 신청 대상품목, 재배면적, 신청농지·지급대상자의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확인합니다.

○확인사항

- 공통사항 : 신청인(농업인)의 신청서 기재사항
- 밭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 확인사항
  · 신청농지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여부
  · 신청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여부
- 조건불리직접지불 보조금 신청인 확인사항
  · 신청인의 신청자격 유무, 신청농지의 보조금 지급대상 적격여부 등을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서류나 AgriX시스템, 현지확인 등을 거쳐 확인 함

※ 구비서류

가.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1. 해당 농지가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가 공부상 밭으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시행규정 제40조의3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9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다.「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2. 신청인이 시행규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등록신청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신청인의 경우 경작자증명서류(임차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이 변경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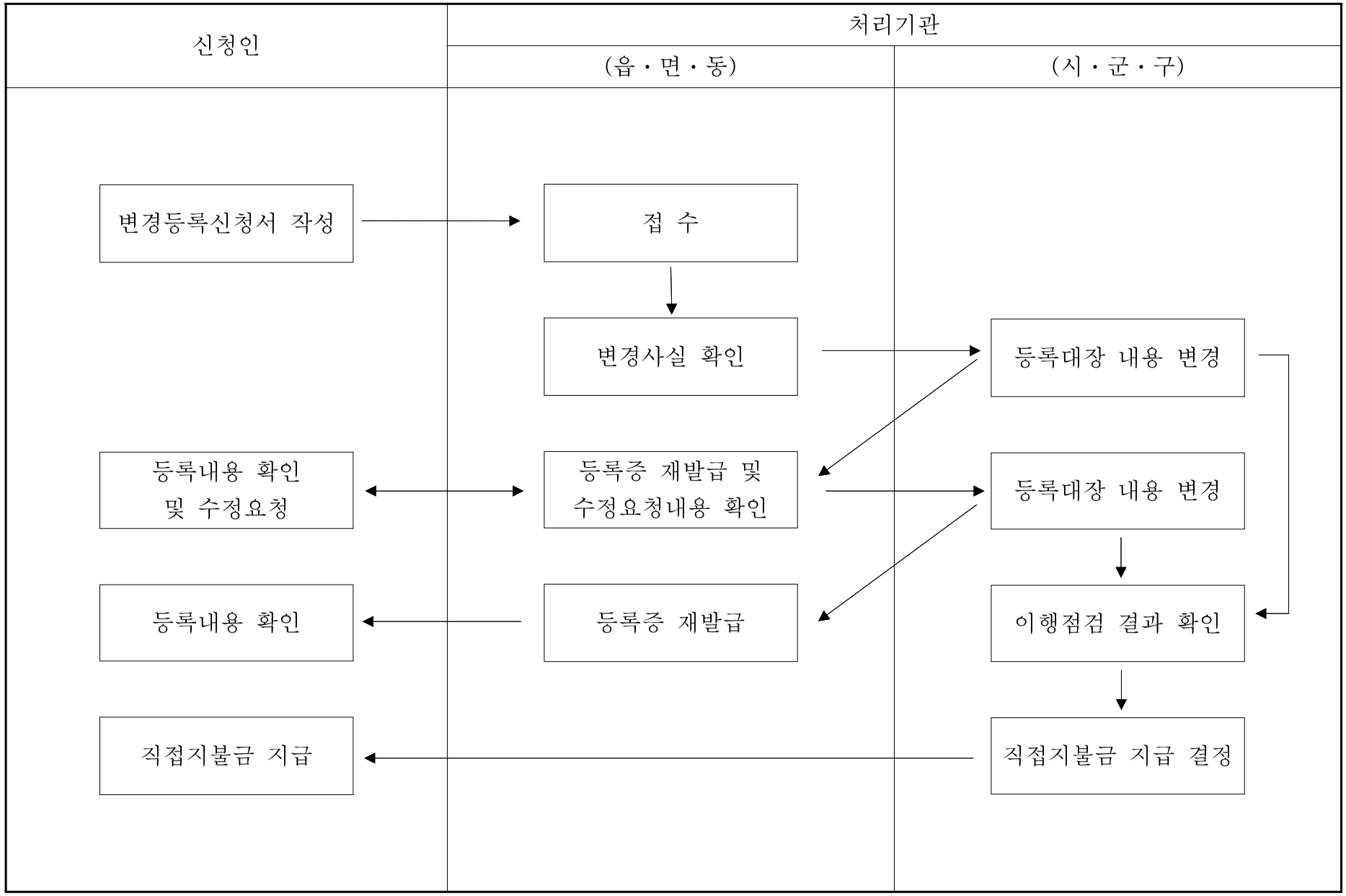

<별지 제3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1. 운영위원회 현황

마을명		위원장 성명	
주소		전화	

2. 지급 대상자 및 대상토지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 소	지급대상면적(㎡)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초 지	
합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지급대상면적을 기재
※ 위원장은 선정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법정리(마을명)	시·도 시·군·구 읍·면 리(마을)
협약 참가자	총 명(자연인 , 법인)
대상면적	총 ㎡(논, 밭, 과수원, 초지)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 시장·군수·구청장
○○ 마을 운영위원회

조건불리지역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을 물론 영농활동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마을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1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관리협약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5년)

2. 협약내용

제1조(지급대상자)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갑”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이라 한다)로 선정한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2조(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는 시행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이하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시행규정 제26조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마을발전계획서 작성,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마을공동기금 조성·관리 및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등 위원장 및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위원장은 마을공동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 또는 지급대상자 중에서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계담당자를 선임한다.

⑤ 회계담당자는 마을공동기금의 입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등) ① “을”의 각 지급대상자는 “갑”이 제시하는 농지관리 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와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농지관리 의무(필수 의무)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시작 연도부터 사업시행 기간 동안 지급대상 농지(초지)의 경작(관리) 의무

2.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필수 의무)

가. 조건불리보조금의 20%이상 수준에서 지급대상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조성하기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나. 마을공동기금을 관리협약의 이행, 관리협약의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소요 경비로 사용할 의무

다. 기타 마을공동기금과 관련된 지급대상자간의 합의 사항 준수 의무

3.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의무(매년 1개 이상 실천 의무)

○ 마을 여건과 지급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그린투어리즘 등 마을활성화 실천과 경관작물 재배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관리협약 합의내용(붙임)에 반영하고, 매년 1개 이상을 실천할 의무

② 위원장은 지급대상자가 제①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지도하고, ‘관리협약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③ 지급대상자는 위원장·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와 협력하여 제①항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①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불이행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사업시행 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또는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자격 상실) ① “갑”은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은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을”을 경유하여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대상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

제6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 및 각 지급대상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갑”은 지급대상자간 합의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운영위원회가 신고한 마을공동기금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제7조(지급제한 등) “을” 및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갑”으로부터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8조(해석) 이 관리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과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시행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약정 체결 당시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특약사항)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과 이 관리협약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사이 또는 “을”의 지급대상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1. 2. 3.

3. 관리협약 대상 지급대상자 및 토지 현황

연번	지급대상자				대상 면적(㎡)					서명(인)
	읍·면·동	리	성 명	주민번호	합계	논	밭	과수원	초 지	

* 본 표는 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지급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4.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붙임)

위 관리협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관리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마을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붙임)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

1. 마을의 공동 목표(미래상)

가. 마을의 공동 발전 목표(장기목표)

○

** 마을발전계획서의 마을발전목표 기재*

나.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사업기간 내)

○

** 위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기간(5년) 동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기재*

2. 운영위원회 명부

직　　책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운 영 위 원			
운 영 위 원			
운 영 위 원			
운 영 위 원			회계담당

3.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가. 조성 비율 : 보조금 수령액의 ____%(조성 예정금액　　천원)

나. 사용 용도

구체적 사업내용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계　획	
	추진 기간	예 산
		원
		원
		원
		원
		원

〈작성 요령〉

① 1란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전개, 전통문화·생활풍습 등의 전승을 통한 도시 주민과의 교류추진 등 마을의 공동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작성

② 2란은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 명단을 작성

③ 3란은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최소20%이상) 및 조성 예정금액을 작성하고,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별 추진기간 및 사용 예정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권장 사항〉

1. 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
 가.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 및 운영(그린투어리즘)
 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다. 향토축제
 라. 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와의 컨설팅 등 마. 한계농지 정비사업
 바.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사.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아. 소득 유망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마을 소득작물 개발
2.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가. 친환경농업 지원 나. 겨울철 사료·녹비작물 재배 등
 다.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경관작물 식재 라. 마을 꽃길 조성
 마. 토양유실을 배려한 영농 실시(초생대 및 승수로 설치, 다랑논 보전 등)
 바. 한계농지의 조림(임지화) 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아. 마을 공동방역 자.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3. 농용지 보전 활동
 가.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나. 간이기반정비
 다. 토지개량사업 라. 공동 농수로 정비
4. 지역마켓팅 활동
 가. 마을 웹사이트 개설 나. 전자상거래
 다. 정보화 교육 라. 산지 공동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마.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5. 마을주민 복리향상
 가.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나.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마을 공동기금 조성 취지에 맞게 당해연도 소모성 경비지출이 당해 연도말 기준 마을공동기금 총 예상잔액의 30%를 넘지 않도록 함
 마.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
※ 상기 1내지 4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마을공동기금에서 활용 가능
※ 기타 마을 구성원의 합의를 거친 마을공동 사업실시에 마을 공동기금 사용 가능

<Agrix 별지 제5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 대상 / ☐ 대상 변경 확인결과

☐ 지급대상자(변경자) 명단

마을·리·동	주소(번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면적(㎡)	자경 확인면적(㎡)					임차 확인면적(㎡)					지급예상액(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소계	○○ 명 신청														
	소계	○○ 명 신청														
총합계		○○ 명 신청														

※ 신청면적과 확인면적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지급면적을 기재

☐ 지급대상 제외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면적(㎡)	제외사유

※ 지급대상 제외자는 신청자격이 없는 자, 신청농지 전체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된 자임

20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20 년)

□ **마을 현황**

마을명		법정리명		위원장 성명	
대상농지면적			m^2	지급대상자수	명

□ **필수의무 이행 상황**	이행점검결과	
○ **농지관리 의무**	이행점검단	
① 대상 농지관리(경작) 및 초지관리 의무 이행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개인별 농지 및 초지 관리의무 이행 내역은 <별지 제6-1호 서식>에 작성		
○ **마을공동기금 적정 관리 의무**	이행점검단	읍·면(시·군)
①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② 마을공동기금 관련 증빙서류 보관 여부		
③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여" 또는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선택적 의무 이행 상황**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 의무**	이행점검단	읍·면(시·군)
①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②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③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본 이행점검표는 위원장(위원장 지정한 운영위원) 및 읍·면(시·군)의 이행점검을 실시한 담당자가 작성

<별지 제6-1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20 년)

지급대상자 현황

①지급대상자	성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농지관리의무 이행상황

②농지 소재지				③ 지목 (공부)	④면 적 (㎡)							⑥ 토지관리현황 (작물명, 방치, 시설유무 등)
시·군	읍면	리	지번		공부 상면적	신청시 확인면적 (A)	실제경작(관리)면적(B)				제외할 면적 (A-B)	
							논	밭	과수원	초지		

20 년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토지관리의무 이행상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이행 점검단	성명	(서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서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확인자	읍·면 확인자 : 소속 성명 (서명)	시·군 확인자 : 소속 성명 (서명)

< 작성요령 >

* 본 이행점검표는 관리협약 이행점검표의 첨부서류이며, 시·군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후 읍·면에서 '신청시 확인면적', '이행점검단'란까지 기재된 상태로 Agrix에서 출력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 본 이행점검표는 마을 자체이행점검단이 보조금 신청 농지 및 초지의 관리의무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실제경작(관리)면적 및 토지관리현황 등을 기재,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읍·면장에게 제출)
* 읍·면 및 시·군 확인자 란은 본 이행점검표를 기초로 이행점검을 확인한 경우 확인자가 서명

<Agrix 별지 제7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 선정 ☐ 확정 결과

< ○○○도 >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 천원 (국비 : 지방비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수)	법정리 (수)	행정리 (수)	신청현황							선정(확정)결과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천원)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농가지급	공동기금
						계	경지계	논	밭	과수원	초지		계	경지계	논	밭	과수원	초지			
합계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은 행정비를 제외한 조건불리보조금액임
* 경지계 = 논+밭+과수원, * 계 = 경지계+초지

<Agrix 별지 제8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도)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지급농지 현황

(단위 : ㎡, 호)

사군	읍·면·동(수)	법정리(수)	행정리(수)	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불이행						
				신청수	지급 면적(㎡)					신청수	불이행 면적(㎡)					불이행 사유
					계	논	밭	과수	초지		계	논	밭	과수	초지	
계																

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직접지불금 집행현황

(단위 : 원, %)

사군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농가+마을)				잔액(반납액)				마을공동기금(법정리)	
	계	국비	도비	사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사군비	조성비율	법정리당 조성금액
계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행정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사군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사군비	
계													

<별지 제9호 서식>

읍·면장 임대차 확인서

<실경작 및 임대차 사실 확인>

농 지				농지소유자		경작자(임차인)			임대차 기간
지번	지목 (공부)	공부상 면적(㎡)	실경작 면적(㎡)	성명	주민등록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 제출 사유(구체적으로 명시) :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제출자 ○○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운영위원 (인)

운영위원 (인)

운영위원 (인)

운영위원 (인)

○ 확인 결과 :

확인자 **읍·면·동장** 직인

※ 이 확인서는 농지소유자가 해외 장기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실제 경작 여부를 운영위원장과 읍·면장이 공동으로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농지임대차계약서(예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농지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약정하고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농지의 표시

농지소재지			
지 목		면 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①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표시 농지의 임대차기간, 연간 임차료 및 임차료 지급약정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

임 대 차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연 간 임 차 료	금 원 또는 수확량의 %
임차료지급약정일	매년 월 일까지 또는 까지

②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에 당해 연도의 임차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임차료의 지급) ① 임차인은 해당 연도의 위 연간임차료를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현물의 경우 연간임차료를 위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재배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수확한 후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농지의 인도) 임대인은 위 농지를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게 한다.

제4조(농지 사용·수익의 방법) 임차인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용도만으로 위 농지를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지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농지의 전대
2. 임대차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성작물의 재배
3. 공작물의 설치 및 농지의 용도변경·형질변경

제6조(계약의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4조·제5조를 위반하거나 임차료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농지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농지의 반환) 임차인은 위 농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서는 위 농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1.

2.

위 농지임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임차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농지사용대차계약서(예시)

사용대주와 사용차주 쌍방은 아래 표시 농지의 사용대차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약정하고 농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농지의 표시

농지소재지			
지 목		면 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사용대차 기간) 사용대주와 사용차주는 위 표시 농지의 사용대차 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년)로 합의한다.

제2조(농지의 인도) 사용대주는 위 농지를 년 월 일까지 사용차주에게 인도하고, 사용대차기간 중 사용차주가 사용·수익하게 한다.

제3조(농지 사용·수익의 방법) 사용차주는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 하는 용도만으로 위 농지를 사용·수익 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의 제한) 사용차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대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지 사용차권의 양도 및 사용차 농지의 전대
2. 사용대차 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성작물의 재배
3. 공작물의 설치 및 농지의 용도변경·형질변경

제5조(계약의 해지) 사용대주는 사용차주가 제3조·제4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용차주는 사용차주의 귀책사유 없이 농지사용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농지의 반환) 사용차주는 위 농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사용대주에게 반환한다.

제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서는 위 농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1.

2.

위 농지사용대차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대주와 사용차주는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대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사용차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현지조사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면적 (㎡)	조사결과 (지목, 면적, 휴·폐경 등)	비고
법정동명	본번	부번	지목				

3. 신청인(배우자) 확인

○ 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 불일치된 사항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변경등록에 동의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배우자) : (인)	연락처 :

4.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 특이사항 기록내용 : 신청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 전화녹취 일시· 수화자 성명· 통화내용, 농가면담 사항, 휴경농지 경운 및 잡초제거 협의 일자 등

<사진>

* 현지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별지 제13호 서식>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품목	면적(㎡)	조사결과 (지목, 면적, 휴·폐경 등)	비고
법정동명	본번	부번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